

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구축

2018. 08.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구축」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8.

충남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권영현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9
제1절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11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	13
1. 주민참여예산 범위	13
2. 주민참여 방법	14
3.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	15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15
5. 주민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	16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 유형	17
1. 운영모델 설정의 필요성	17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유형	20
3. 광역도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22
제3장 현황 및 실태	25
제1절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27
1.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과정	27
2.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28
3.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	37

제2절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46
1. 조사대상 및 방법	46
2. 시군별 운영 현황	46
2. 시군 현황의 주요 특징 정리	83
제4장 사례조사	91
제1절 조사 개요	93
제2절 대상별 사례조사	95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95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106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112
4.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121
5. 국민참여예산제	134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종합	137
1. 운영사례 특징 종합	137
2. 시사점 종합	143
제5장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149
제1절 기본 전제	151
1.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구성요소	151
2. 모델 설계의 주안점	152
제2절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	157
1. 운영모델(안) 요약	157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158
3.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163
4. 주민참여예산 기구	179
5.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181

제6장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189
제1절 기본방향	191
제2절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	193
1. 15개 시·군 주민참여예산 박람회	193
2.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194

표 목 차

[표 1] 광채기(2011)의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유형 구분	20
[표 2] 충청남도 세출예산 규모	29
[표 3]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	29
[표 4] 2017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의견수렴 결과	31
[표 5]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기구 현황	84
[표 6] 충청남도 시·군 예산학교 운영 현황	85
[표 7]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수단 현황	87
[표 8]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기구 현황	93
[표 9]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구성	95
[표 10]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구성	100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선정 절차	108
[표 1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113
[표 1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116
[표 1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 운영	116
[표 15]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 분류	154
[표 16]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	157
[표 17]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160
[표 18] 주민참여예산의 종류	164
[표 19]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정량지표 정리	201
[표 20]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정성지표 정리	202

그림 목 차

[그림 1] 공모사업 추진 절차	32
[그림 2] 2018년 공모사업 추진의 주요 흐름	32
[그림 3]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34
[그림 4]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36
[그림 5] 서울특별시 시정참여형 사업 선정 절차	96
[그림 6] 서울특별시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절차	97
[그림 7]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전담 조직	102
[그림 8]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	103
[그림 9] 경기도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113
[그림 10] 경기도 주민제안사업 예산편성 절차	114
[그림 11]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	118
[그림 12]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사업 공모 유형	122
[그림 13] 대구광역시 시정참여형 사업 예산편성 절차	123
[그림 14] 대구광역시 지역참여형사업 예산편성 절차	124
[그림 15]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지원 행정조직	130
[그림 16]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	131
[그림 17] 국민참여예산 진행 절차	135
[그림 18] 국민참여예산 운영조직 및 인력	136
[그림 19]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구성요소	151
[그림 20] 예산과정상 주민참여의 범위	161
[그림 21] 주제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제안사업 예산반영 절차	165
[그림 22] 주민제안을 통한 사업선정 절차	168
[그림 23]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평가표	169
[그림 24] 신규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172
[그림 25] 국고보조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173
[그림 26]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	174
[그림 27] 소규모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177
[그림 28] 소규모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선정 평가표	179
[그림 29]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182

[그림 30] 주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185
[그림 31]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186
[그림 32]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 지원 행정조직(안)	187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제시

- 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계획을 밝힘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의 자율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정책 추진

-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5개 추진과제 중 2개 과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세부과제로 선정함
 -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과제에서는 지방재정의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제시함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추진과제에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범위를 확대를 제시함
- 행정안전부는 2018년 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 전 과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권고함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참여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한계점 노출

- 충청남도는 2012년부터 6년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2017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로 수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음

- 그럼에도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과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도민참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제도운영이 형식화됨
 - 둘째, 2017년부터 도입한 도민제안사업은 민원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광역도 도민참여예산제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함. 제안된 사업은 광역도 보다는 시·군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 셋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참여 기회가 제한됨
 - 넷째,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환류하기 위한 참여예산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함
 - 이 외에 예산 배분 과정에서의 집단 간 갈등과 편파적인 이해관계 발생, 그로 인한 신속한 의사 결정 저해, 참여예산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갈등 상존 등의 문제점 나타나고 있음

■ 광역도 차원의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구축 필요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상당부분 광역도 특성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넓은 지역, 다수의 주민, 다양한 계층 등의 광역도 특성은 주민참여, 주민의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어렵게 함
- 따라서 이러한 광역도의 특성을 고려한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충청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의 선도적 입지를 유지하여야 함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어 주민의 주민참여 인식수준이 높아야 함
- 그러나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도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광역도가 관할구역 내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은 제도상 광역도의 역할임

2. 연구의 목적

■ 광역도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구축

- 넓은 지역, 다수의 주민, 다양한 계층 등의 광역도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함
- 이와 함께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함
- 이를 바탕으로 시·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18년

■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참여방법
 -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기구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 문제점
- 충청남도 15개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참여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기구 운영현황
- 타 시도 참여예산제 운영 사례조사
 - 서울시, 경기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조사
 - 조사대상별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기구 등 현황
 - 사례대상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광역도 차원의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모델 개발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모델 설계의 전제
 - 광역도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기구
 - 광역도 주민공모사업 및 소규모밀착형 공모사업의 추진 방법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시·군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도의 역할 개발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방법

2. 연구의 방법

■ 연구방법

- 문헌·자료 등 수집과 분석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의견조사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 유형

제1절 주민참여예산의 의의¹⁾

■ 주민참여예산의 등장배경

- 1989년부터 브라질의 작은 도시 뽀르뚜 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이 급속히 전세계의 도시들로 확산된 데에는 후기 산업화 시대의 질적 사회 발전에 대한 절실한 요구와 맞닿아 있음
-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이제까지의 사회 발전을 이끌어 오던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동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던 시기임
- 이에 대해 세계인들이 합의한 결론 중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는 대안은 거버넌스로 표현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임
- 즉, 산업화 시대 이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발전은 과거와 같이 정치지도자의 일방적 결정과 이를 성실히 추종하는 시민들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한 이들에게 사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세계적 합의
-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참여의 모델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고, 뽀르뚜 알레그리 참여예산은 그러한 상황에 적절한 정책으로 수용되기 시작함
- 이는 비교적 모범적 참여예산의 사례로 알려진 스페인 알바세테시나 독일 베를린시의 리히텐베르그시의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로 인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5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참여예산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 이상의 등장배경에 근거해 참여예산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참여예산은 단지 일부 예산을 주민들에게 주어 예산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1) 이 절의 내용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연구위원이 작성한 “광역시자치단체 충남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안 제안”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 주체의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임

- 즉, 주민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예산과정의 새로운 직접적 참여자로 등장함으로써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임성일, 2015)²⁾
- 둘째, 참여예산은 예산이 풍부한 곳에서 가용재원의 일부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것임
- 셋째,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의사가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공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임성일, 2015)
- 넷째,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임성일, 2015)

2) 임성일.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향 방향. 「월간 자치발전」, 12월호.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³⁾

1. 주민참여예산 범위

- 예산범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예산(회계)의 범위임
 - 현재 일반회계 중심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제안(공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주민참여범위를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확장하고 있음
- 참여대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대상을 의미함
 - 예산안: ① 예산편성 전 예산편성 방향, 중점투자 방향, 투자우선 순위 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on, off-line 설문조사·의견제시·간담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② 예산안 혹은 부서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조정(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 등)
 - 주민설명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본예산 중심)
 - 주민제안사업(공모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3호의 사업공모 절차로 일반주민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지칭함
 - 주민제안은 직접 인터넷(홈페이지) 혹은 읍면동별로 받으며, 제안사업은 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에서 결정함)
 - 기타(공모 외 주요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으로 주민참여를 거치도록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안산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함
- 참여단계: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의 범위
 - 예산편성과정에만 주민참여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 단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주민 참여
 - 논산시: 주민제안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 안산시: 지역회의 요구사업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
 - 예산편성, 사업 모니터링·성과평가에 주민참여
 - 논산시,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성과 보고회 시행
 - 서울시 모니터링 및 평가(집행단계에서 모니터링, 완료단계에서 사업 효과성 등 평가)

3) 이 절의 내용은 서정섭 외(2018)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보고서의 43~47페이지 내용을 발췌한 것임

2. 주민참여 방법

■ 예산편성 단계

- (사업공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3의 사업공모
- (설문조사) 예산편성 방향, 공모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공모 외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 방식의 주민의견 조사
- (공청회, 설명회) 예산편성 방향, 공모 외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방식의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간담회) 담당공무원(단체장 포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와 일반주민과의 사업 발굴 등
- (홈페이지, 읍면동을 통한 의견제시) 주요사업 결정, 투자우선순위, 예산편성 방향 등의 주민의견 제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 간 숙의를 거쳐, 공모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방향, 공모 외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 예산안 전체, 부서의 예산요구사업,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심의·조정
- (투표방식) 현장·전자투표를 통한 공모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 집행 및 결산 단계

- (집행) 공모사업 등의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 (결산) 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성과평가, 결산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서울: 예산집행 모니터링 참여 및 시민참여 결산 실시. 서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산분과에서 참여예산사업 내용에 적합한 집행 유무, 사업비 낭비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시 예산 전반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 주민제안사업 등 참여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는 많은 단체에서 시행함

3.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

-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주민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능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 내용 등을 심의하는 기구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하부 기구로서 특정 분야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 (지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하부지역(읍면동 등) 별로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 기구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역 별로 배분된 공모사업의 우선순위로 결정
 -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는 기구
 -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와 집행부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의 예산안 반영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기구
 - 주로 민관협의회, 조정협의회, 조정위원회 등의 명칭 사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보조기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예산학교)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주민의 재정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참여예산 중심으로 교육
 - (예산연구회)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홍보 방안 등 연구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연구, 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주민참여예산 홍보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 (공모·추첨)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 예산학교 사전수료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나 성별·연령별·지역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쿼터제 등의 장치를 두는 경우도 공모·추첨에 해당

- (공모·심사) 공모 후 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추천) 단체장, 의회, 시민단체, 지역회의 등의 추천에 의해 선정
- (당연직) 공무원 등 일정 직위에 있는 자가 자동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경우

5. 주민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

- 주민의견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민참여기구 구성 현황 및 연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 사업공모제 운영실적 및 사업별 우선순위
 - 자치단체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주민의견서
 - 예산안 전체에 대한 주민의견은 분야-부문별 지출 비중에 대한 주민의견, 분과별 주민의견 등이 있음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 유형

1. 운영모델 설정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주민의견서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됨
 - 2014년에는 주민의견서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조항을 신설함
 - 2018년에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편성 단계에 국한하지 않도록 개정함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의 방법을 제시함
 - 주민참여 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

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를 제시하였으나 이외의 방법은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함

<p><지방재정법 시행령></p> <p>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p> <p>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그러나 최근 2018년 6월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참여방법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제시함

구 분	현 행	개정안
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	<신 설>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참여수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현행) +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 + 사업 제안
인터넷 누리집 운영	<신 설>	지자체별 인터넷 누리집 운영 근거 - 주민의 사업제안 온라인 접수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 공개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6월 25일 보도자료

-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 동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2018.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킴
-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됨
 -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에의 참여’가 포함되며, 그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루어진 ‘사업 공모’가 ‘사업 공모-제안’으로 확대되어 주민이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면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내용의 입법예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이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광역도와 시·군 간에는 물리적 공간 및 지역주민수 등의 차이로 인해 참여 방법과 참여수준에서 동일한 접근이 어려움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맞춰 적합한 모형을 수립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인 주민참여 수준, 즉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예산편성권) 수준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하여야 함(곽채기, 2011)
 -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곽채기, 2011)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수준을 명확하게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주민참여절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 간의 예산편성권 배분 및 행사방법 등을 설계하는 것이 필

요함(곽채기, 2011)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설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모델의 성격에 적합한 주민참여방법과 수립된 주민의견의 합리적 처리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곽채기, 2011)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유형⁴⁾

- 곽채기(2011)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을 설계하여 제시함

[표 1] 곽채기(2011)의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유형 구분

모델유형 분류 기준	의견수렴형 참여예산제	주민협의형 참여예산제	민관협치형 참여예산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수준	정보제공 (민→관)설득	협의(consultation) 협력(partnership)	협동(cooperation) 권한위임	(주민)통제
예산편성권의 공유 수준	관료중심적 의사결정	주민협의를 통한 관료적 의사결정	민·관 공동의사결정	주민중심적 의사결정
주민참여과정의 주도자	관료	관료+주민참여조직	주민참여조직	주민참여조직
주민참여권의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없음	제도화(단일조직) 소극적·제한된 역할 부여	제도화(다원적 조직) 적극적·제한된 역할 부여	제도화(다원적 조직) 적극적·포괄적 역할 부여
참여범위와 대상	예산편성 작업 시작 전단계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일부 과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 통합재정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 일반회계
의사소통방식	상향적 일회적	수직적 쌍방향 제한적	수직적·수평적 쌍방향 반복적	수직적·수평적 쌍방향 반복적
주민참여방식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설문조사, 사업공모, 토론회, 주민참여조직	설문조사, 사업공모, 토론회, 주민참여조직	설문조사, 사업공모, 토론회, 주민참여조직

출처: 곽채기(2011)

4) 곽채기(2011)의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곽채기. (2011).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사례와 발전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4호.

-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은 주민참여수준, 예산편성과정 참여주체인 주민과 자치단체의 집행부 간 예산편성권의 공유 수준, 주민참여과정의 주도자, 주민참여조직의 구성형태 및 역할구조, 의사소통방식 등이 각 모델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됨
- 첫째, ‘의견수렴형’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주민참여과정을 관료가 주도하는 방식임.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주민참여가 정보제공(민→관)이나 설득의 수준에 한정되고, 예산편성권의 행사도 상향적 의견수렴 절차가 작동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료중심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주민협의형’ 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과정을 관료와 주민참여조직이 함께 주도하는 가운데 협의(consultation) 또는 협력(partnership) 형태의 주민참여 수준에 기초하여 예산편성권이 쌍방향적 주민협의과정을 통한 관료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행사되는 모델임.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주민참여조직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활동이 수행되기는 하지만 수렴된 의견의 처리절차는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됨
- 셋째, ‘민관협치형’ 참여예산제도는 다원적으로 설계된 주민참여조직을 중심으로 주민참여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동(cooperation) 또는 권한위임 형태의 주민참여 수준에 기초하여 민·관 공동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예산편성권이 행사하는 모델임.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주민참여조직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활동이 수행되는 가운데 주민참여조직 자체 토론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민·관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처리하게 됨
- 넷째,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도는 기존 모델에서 시민주도적 예산참여형, 적극적 민관협치형, 주민주도결정형 등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임. 따라서 이 모델은 주민참여과정을 주민참여조직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민통제의 주민참여 수준을 바탕으로 주민중심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 행사됨

3. 광역도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 유형

- 위에서 제시한 광채기(2011)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은 이론적 모델로서,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2010에 배포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1안, 2안, 3안)’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에서는 주민주도형, 민관협치형이 나타나고 있음
- 광채기(2011)의 모델에 따르면, 행안부가 제시한 모델 1안은 의견수렴형에 해당되고, 모델 2안은 주민협의형에 해당됨(서정섭 외, 2017: 28)
-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 주체의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므로, 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은 민관협치형 모델이나 주민주도형 모델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도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 모델 유형

- 그러나 민관협치형 모델이나 주민주도형 모델을 현실 행정에 적용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참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역량이 부족하고 사회자본 수준이 낮을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음
 -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자치단체장에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주민주도로 추진될 경우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
 - 광역도와 같이 넓은 지역과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성을 갖춘 주민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민관협치나 주민주도 자체가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참여의 대상규모와 범위가 다양할 경우 주민협의형이나 민관협치형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제한된 사업영역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모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서정섭 외, 2017: 29)

제3장 현황 및 실태

제1절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제2절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제1절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1.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과정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는 2010년 7월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함
 - 충청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이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짐
 - 충청남도는 2004년부터 예산편성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음(이정만, 2014)
- 2010년 10월에 개최된 제1차 도민정상회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2011년 초에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 도입을 결정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이에 대한 업무를 지시함(장수찬, 2012: 50; 이정만, 2014 재인용)
- 예산담당관실은 2011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모델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작성하여 충남도의회 제243회 임시회에 제출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포함하여 도지사, 도의회, 시장·군수 추천을 통해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기능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함
 - 예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둠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고, 재량적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재정 현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됨

- 이후 2011년 10월에 제246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수정 의결의 형태로 통과됨
 - 도지사와 집행부의 대 의회 설득,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점 등이 작용함
 - 의회가 수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10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축소하고, 2)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선정 방식에서 주민 공개 모집의 근거를 삭제하고, 3)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4) 예산학교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삭제함
-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1월 19일에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됨
- 조례에 포함되지 못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2012년 2월에 제정한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2.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1)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 중 예산편성에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의 집행단계나 결산 단계에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다소 고정적인 세입에 맞춰 세출을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는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회계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됨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는 일반회계에 한정됨. 2018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5조 1,735억원임
- 그러나 일반회계 전체가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표 2] 충청남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세출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8	6,647,717	5,173,500	463,028	1,011,189
2017	6,241,561	4,735,000	437,467	1,069,094

주)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2017년도, 2018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

-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용도에 따라 국고지원사업, 지정재원사업,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자체사업의 5가지로 구분됨
- 이 중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는 국고지원사업, 자체사업에 국한됨
 - 매년 2월~3월 사이에 개최되는 실국별 도민초청 토론회에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자체사업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토론회는 국비, 지특,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함

[표 3]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A)			2017년(B)			증감액(A-B)		
	계	일반	목적	계	일반	목적	계	일반	목적
합계	51,735	21,964	29,771	47,350	20,106	27,244	4,385	1,858	2,527
국고지원사업	31,581	4,514	27,067	28,331	3,679	24,653	3,249	835	2,414
지정재원사업	176	8	168	272	67	205	△96	△59	△37
법적경비	8,720	6,154	2,566	7,528	5,115	2,413	1,192	1,039	153
의무적경비	5,476	5,449	27	5,510	5,485	25	△34	△36	2
자체사업	5,782	5,782	-	5,708	5,708	-	74	375	-
자율편성대상	2,270	2,270	-	2,240	2,240	-	30	30	-
민간이전경비	257	257	-	238	238	-	19	19	-
대규모·한도외	3,255	3,255	-	3,230	3,230	-	25	25	-

자료: 2018년도 충남도 재정 현황, p. 12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실질적으로는 자체사업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자체사업은 자율편성사업, 민간보조사업, 대규모사업 등으로 구성됨. 이 중 순수한 재량예산은 자율편성사업으로서 2018년 기준으로 2,270억원임. 이는 일반회계 예산 5조 1,735억원의 4.4%에 불과함
-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으나, 광역도의 특성상 전체 예산에 법적으로 관할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하는 재원이 포함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크게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다소 작게 나타남

2) 주민참여 방법

■ 실국별 도민과의 토론회(1~3월)

- 2013년부터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토론회를 실시
- 기간 : 매년 2월 3월 기간 중 실시
- 대상(범위)
 - 도민(분야별 이해당사자 및 관심 도민),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해당 분과위원회)
- 주요내용
 - 각 실·과별 당해년도 사업예산 내용 설명
 - 차년도 신규 및 구조조정 사업 의견수렴, 사업 우선순위 토론 등

■ 도민 설문

-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
- 매년 4월~6월 중 실시
- 사이버 의견수렴 : 도 홈페이지 ‘예산편성예바란다’ 배너 게시
- 온라인 설문 : 도 정책서포터즈 대상(혁신담당관실 협조)
 - 도민설문은 2017년에는 7월 3일 ~ 7월 21일, 19일간 진행됨
 - 참여 현황 : 대상 1,454명, 응답 638명, 43.9%
- 직접 설문 : 예산교육시 교육참여자들에게 직접 설문 실시
 - 설문결과는 도민참여예산위원들에 통보 도민의견 공유

■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동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조례 제11조 1호)
 - 이를 위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수행함(조례 제11조 2호)
- 매년 7월경에 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별(분과별)로 실시함
 - 실국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우선순위 자문 및 의견 검토
 -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수렴 의견 반영 검토
- 2017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예산반영 : 1,976건 2,639억원

[표 4] 2017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의견수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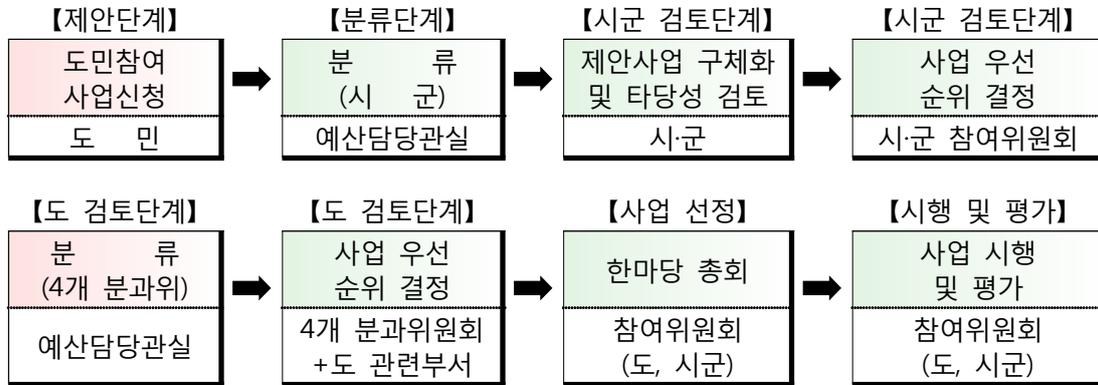
(단위 : 건수, 억원)

구 분	계		행정자치분과		문화복지분과		농업경제환경분과		안전건설해양분과	
	건수	반영액	건수	반영액	건수	반영액	건수	반영액	건수	반영액
참여 예산	1,976	2,639	465	423	403	801	748	985	360	430

■ 주민제안사업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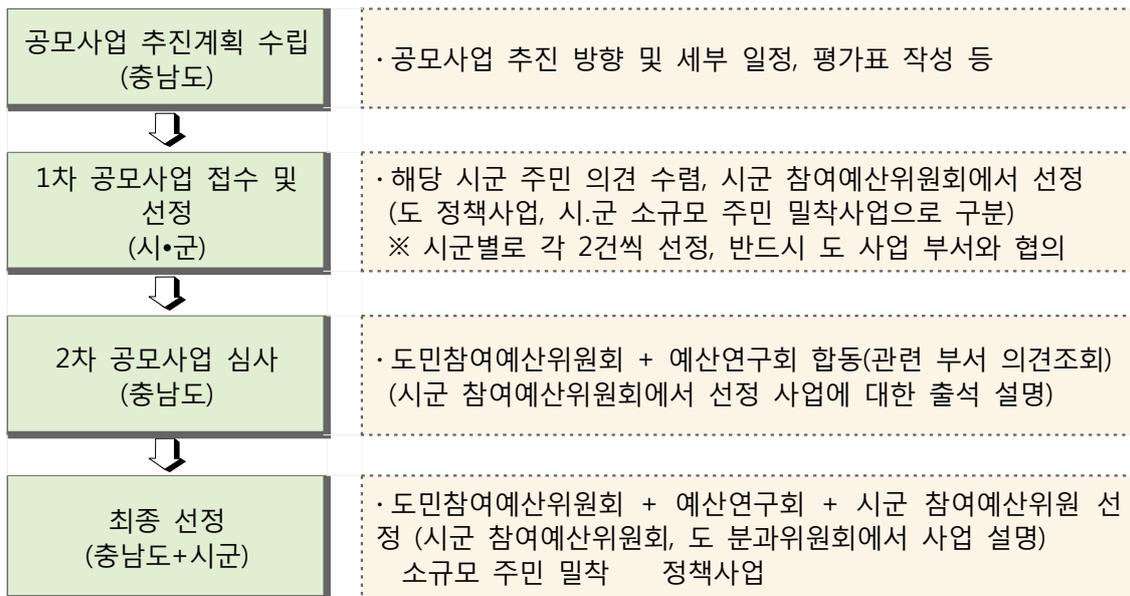
- 2017년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선정
 - 제안기간 및 방법 : ' 17. 7. 3 ~ 7. 28(1개월간) , 우편·팩스 등
 - 도민 공모 예산액 : 60억원(도 30, 시·군 30)
- 추진결과, 총 33건이 결정되었고, 예산은 52억원이 배정됨
 - 주요사업 : 안전한 공기 함께 마셔요, 인생 이모작 마을학교 운영 등

[그림 1] 공모사업 추진 절차



- 2018년 공모사업 추진
- 규모 : 150억원(도와 시·군비 부담비율 추후 별도 조정 검토)
- 150억원 중 100억원은 도 정책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
 - 도 정책사업에 대한 공모는 두 가지 방식 적용. 시·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과 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별로 공모한 사업을 종합
- 150억원 중 50억원은 소규모 주민 밀착형사업 공모
- 기간 : 5 ~ 6월

[그림 2] 2018년 공모사업 추진의 주요 흐름



3) 주민참여 수준

■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 대상은 예산편성 전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예산편성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의견이 실국에 전달되지만, 이후 조치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안에 대한 참여는 의견수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일정 예산을 할당하여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함
-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적격성 판단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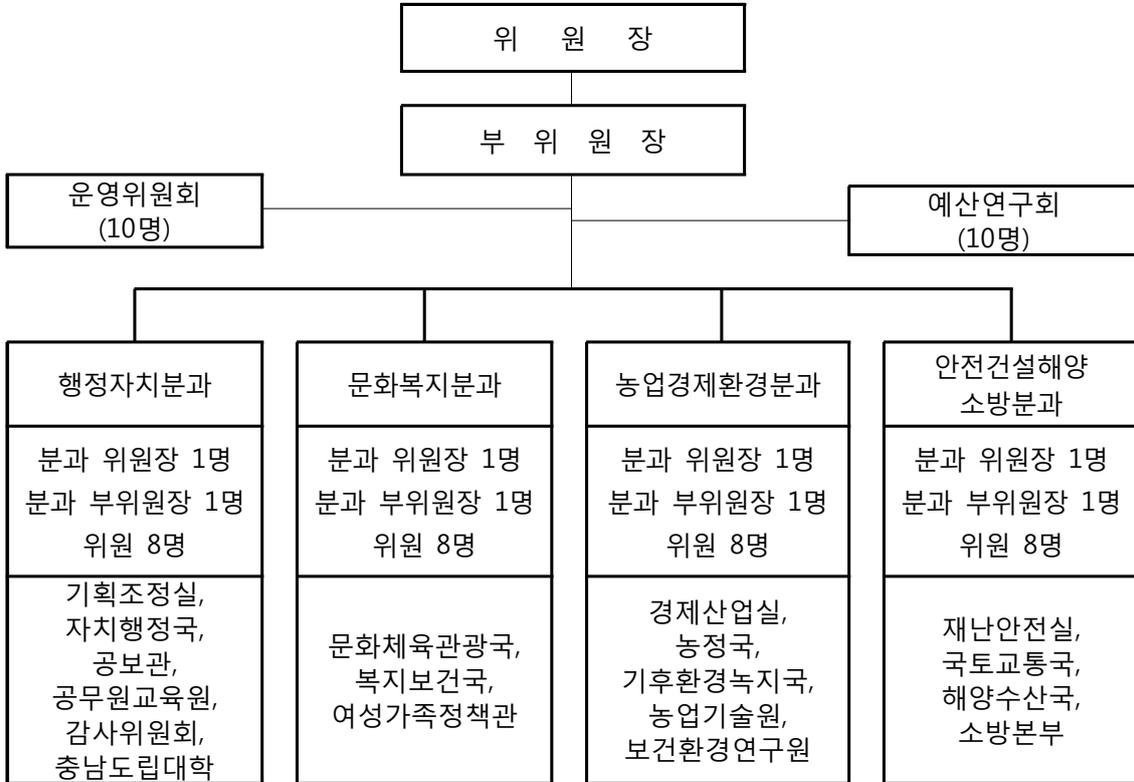
4) 주민참여 기구

- 충청남도의 주민참여 기구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위원회 아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학교와 예산연구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충청남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기구임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조례 제12조 제1항)

[그림 3]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2018년 4월 기준)

■ 예산학교

- 대상 : 충청남도 및 시·군 참여예산위원회와 희망 도민 등
- 방법 : 시·군 순회 방문
 - 2018년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양양군, 홍성군, 태안군의 8개 지역 방문
- 추진방향
 - 시·군 또는 일반 도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운영계획 수립하여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에 대한 예산교육
 - 참여예산위원의 각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심화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1일 4시간으로 진행
 - 지방예산의 이해, 도 재정현황, 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및 사례, 도민참여 방

- 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 참여예산제 홍보, 참여예산사업 발굴, 예산낭비 우려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 예산연구회 회원을 강사로 활용

■ 예산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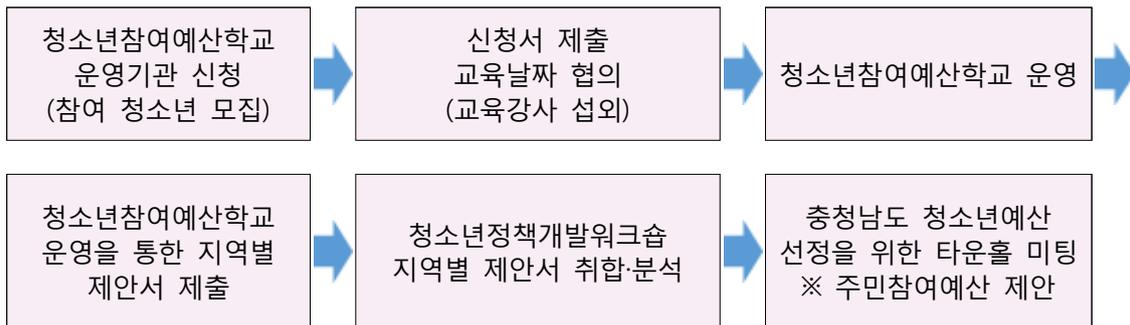
-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예산연구회를 설치함
- 예산연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 그 밖에 예산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8년에 제3기 예산연구회가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됨
 - 민간전문가가 9명으로 구성되었고, 당연직으로 예산담당관 1명이 선정됨
- 2017년에는 도민 공모사업 평가표 작성 및 공모사업 선정 기획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청소년참여예산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목적
 - 예산편성과정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 증대, 시민의 일원인 청소년의 의견수렴 및 참여자치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
 - 청소년 관련 예산의 교육·분석·제안·조정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 청소년은 사회구성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시민으로서 더 이상 피동적으로 보호만을 받아야하는 미성숙한 성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간에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수반하는 한 세대이자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협력적 존재 인식 제고

- 향후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충청남도 청소년 예산선정을 위한 타운홀미팅’ 개최하여 道 청소년관련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 횟수 : 15회 정도
 - 대상 :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또래상담자 및 학생회 대표 등 약 40명
 - 내용 : 15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지역별 청소년 관련분야(교육, 복지 등)예산의 이해
 - 청소년 경제교육/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 우선순위 결정기준 및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논의 등

[그림 4]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자료: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7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기관 모집 안내”

- 충청남도 청소년예산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
 - 기간 : 2018년 기준 8월 중
 - 장소 : 충청남도청
 - 대상 : 충청남도 청소년참여기구 참가 청소년 및 예산학교 참여 청소년 약 300명
 - 내용 : 道 청소년 관련 예산 제안 선정
 - 지역별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진행된 시·군별 道청소년 예산 제안서 취합
 - ⇒ 도내 청소년 대표자들이 모여 타운홀 미팅을 통한 道청소년 예산 우선순위 선정
 - ⇒ 정책입안자(도지사) 제안서 제출 ⇒ 평가 및 환류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추천과 공개모집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정됨
- 도지사, 도의회, 시·군에서 각각 추천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40명의 위원을 구성함
 -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조례 제12조 제1항)
- 2018년에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도지사 5명, 도의회 5명, 시·군 15명을 추천하고, 15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식을 적용함
 - 이전까지는 공개모집 인원이 10명이었으나,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명으로 확대함
 - 또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위원 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림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

1) 주민참여 수단별 문제점

■ 실국별 토론회

- 이해당사자 토론회 홍보 부족 등으로 도민의 참석을 저조
 - 일부 특정계층(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위주의 토론회 개최
 - 예산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토론 참여 기피
-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기간 및 예산편성 과정 이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회 장을 마련하는데 한계
 - 일부 이해당사자의 신규사업 추진요구로 예산반영에 대한 실효성 미흡
- 실국별 현안에 대한 도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력의지 다소 부족

■ 도민설문

- 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 관심 부족으로 자발적 참여 저조
 - 인터넷 설문 참여자 전무, 우편설문 참여율 19.2%(188명/977명)
- 예산편성 절차나 도·시군의 재정에 대한 이해 부족
 - 건의사업 내용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내용 반영 어려움

■ 예산학교 운영

- 관 주도의 비자발적 교육으로 가시적 성과 미흡
 - 특정 인사 위주로 교육대상자가 편중
 - 시군 참여 미온적
-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시간, 예산 등 능동적 대처 미흡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 도민참여예산위원이 추천제로 위축되어 대표성이 미흡
 - 그러나 2018년에 제3기 도민참여위원 위촉시 공모비율을 제고하여 대표성 개선
- 분과위원회 운영시 40명의 적은 위원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에 대한 자문 한계
- 예산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후,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으로 참여예산위원의 효능감 저하
 - 참여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감 부족으로 사기 저하
- 실국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 및 자체사업 총액배분제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때 자료 작성 부실로 인한 위원 불만 제기
- 실국별 분과위원회와의 협력체제 및 위원회 소집 한계
- 도민참여예산위원의 편중화로 인하여 다양하고 발전적인 도민 여론 수렴의 한계

■ 주민제안사업 공모(2017년)

- 시·군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공모되어,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 성격에 부적합
 -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동일 방식으로 추진
- 도민 홍보 부족 등에 따라 시·군별 사업 신청 및 지원액 과다 발생
- 일부 시·군의 경우 관계 공무원에 의한 사업 신청 사례 등 발생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도와 시·군 참여예산위원 합동 회의 때 사업 제안자의 설명 없는 서류를 통한 심사로 인한 적격성 판단의 부적절
- 도의회에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제기

■ 기타

- 도와 시·군간 주민참여예산제 협조 체제 저조
- 예산연구회 등 도민참여예산제 보완 지원 시스템 부족
- 참여예산제 마인드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소홀

2)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 의견조사

■ 조사개요

- 시기: 2017년 12월 12일 제3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장소: 충청남도 청양군 호텔 샬레
- 대상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의견조사 실시
- 방법 : 분과위원회별로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토론 및 정리

■ 행정자치 분과위원회

- 참여예산위원의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활동우수자 시상 및 표창 제도 마련
-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법적 강제력 필요

- 참여예산위원 증원 및 분과 증설
 - 분과를 늘려서 자체예산 검토의 양을 줄일 필요. 분과위원회를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증설 필요. 분과별 예산심의 후 총회에 보고
 - 현재 시군별 2~3명의 위원은 시군을 대표하는 인원으로 미흡
 - 시군별로 최소 4~5명으로 증원 필요
- 공모사업 개선
 - 공모사업을 필요사업으로 제한할 필요
 -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군은 공모사업에서 제외
 - 공모사업 선정 후 현장견학
- 분과 매니저 배치
 - 부족한 전문성이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또는 매니저가 배치될 필요
 - 예산연구회 위원을 각 분과별로 배치하는 방안 고려
-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 예산 편성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 분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정보 또는 방향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서류, 자료를 미리 받아보도록 해야 함
- 도청에 도민참여예산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담당하고 연구하는 부서 또는 팀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위원회의 소통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및 소통강화 방안 마련(피드백 활성화)
-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2~3일 정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
 -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
- 분과위원회별 시·군 순회
 - 분과위원회가 분기별로 시·군을 순회하여 자율참여 요망
- 자체사업에 대한 순위결정 후, 실제 예산편성에서 반영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농업경제환경 분과위원회

- 분과를 현재의 4개에서 10개 정도로 세분화할 필요
- 분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위한 워크숍 진행
 - 충분한 대화를 위해 워크숍 진행 필요
- 현장 견학 필요
 -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방문기회를 제공
- 분과위원회 심의 사전 회의 필요
 - 회의 전에 분과위원들만의 시간이 필요
 - 회의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논의 부족
- 공모사업 심의 사전 설명
 - 공모사업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함. 이를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수행
- 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연구회의 소통 강화
 - 연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모름.
- 참여예산위원회 인원 확대
 - 위원 수는 기존의 4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 분과는 4개에서 10개로 증설
-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식 및 자세 변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필요

■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 제안 및 건의 반영을 위한 충분한 토론
 - 위원들이 예산을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서로 충분히 토론할 필요
 - 위원회의 제안이나 건의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소통을 위한 소모임
 - 각 분과위원회별 전체 위원회와 별도로 소모임을 자주 개최할 필요
 - 문화복지 분과는 모임을 자주 개최하여 소통을 확대하였음
- 참여예산위원의 자질 향상 필요

- 분과별 회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
- 활동 전 사전교육 필요
 - 위원회 활성화
 -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필요. 2일 정도의 워크숍 필요
 - 위원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활성화
- 위원의 자질 향상
 - 위원회 회의시 일부 위원들이라도 평소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
- 재직기념패 제작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기념패 제작

■ 안전건설 해양소방 분과위원회

-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함
 - 분과위원의 특성과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 회의 일수 증회
 - 전체 위원회 소집 일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움
 - 예산안 검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원회 위원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 정원확대 필요
 - 분과위원회를 국별로 설치하여 특정 분야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분과위원회별 전문성 제고 가능
- 선진지 견학 및 교육
 - 선진지를 견학하고 워크숍을 통해 교육 확대
- 위원회 기능을 홍보하여야 함
- 시군 협의체를 통한 소통 강화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정리 및 시사점

- 주민참여예산위원 스스로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 부족을 인식
-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대표성과 심의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상황

3) 주요 문제점 종합

■ 낮은 주민참여 수준

-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실국별 토론회의 의견은 단순 의견수렴에 그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통해 실국별 자체사업 중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하지만 강제성이 없음
 - 주민의견의 강제성이 낮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수준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
- 다만,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일정 한도액 내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주민의견의 낮은 대표성

- 실국별 토론회, 도민설문조사, 분과위원회 등 대부분의 주민참여 방법에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의 강제성과 실효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임
- 이는 다수의 주민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도의 공간적 특성에서 비롯됨
- 주민의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함

■ 낮은 도민참여와 다수의 무관심

- 참여예산에 관여되는 주민비율 매우 낮음
- 대다수 주민들은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관심
 - 설문조사 참여율은 43.9%에 불과
- 주민의견 수렴·반영 절차의 정교성 미흡, 주민의식 및 주민의 참여유인 부족, 주민·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 물리적·지리적 여건의 장애, 시간 할당에 대한 기회비용 문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참여할 수 있도록 IT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리적,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해소

■ 주민참여예산의 형식화

-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주민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관여함으로써 민 주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과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화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형식화의 다른 원인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부족과 그에 따른 예산검토 시간 부족,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 주민참여예산제가 개선·발전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매년 제도운영을 점검하고 차년도 계획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그러나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체계는 일회성 행사로 처리되고 있음

■ 충청남도와 시군 간 주민제안사업 공모의 중복성

- 충청남도에서 2017년 도입한 주민제안사업 공모제는 절차와 방식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못해 시·군 사무에 해당하는 소규모 민원 사업 위주로 사업제안이 이루어짐

- 그에 따라 시·군 주민공모사업과의 중복성 발생함
- 도 단위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함

■ 사회적 형평을 위한 장치 부재

- 사회적 약자의 수요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반영하는 역할 미흡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개방적으로 수렴하는 장치 필요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역할 미흡

- 광역도는 관할구역 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그 동안 이러한 역할이 미흡함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음
-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참여예산제 박람회, 운영평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1.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충청남도 15개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주민참여 범위,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절차, 주민참여기구, 예산학교 운영, 기타 특징 등을 통해 파악

■ 조사 방법

- 각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등을 조사
- 2018년 기준으로 현황 정리

2. 시군별 운영 현황

1) 천안시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예산편성 범위
 -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제한 없이 편성
 -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 비예산사업, 재정투자사업심사 대상 사업 제외
- 주민참여 방법
 - ① 시 홈페이지 참여예산방을 통한 의견 수렴
 - ②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③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④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사항 의견 수렴
 - ⑤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 ⑥ 청년 예산정책 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수렴 및 요구사업 결정
- 의견수렴 범위를 2가지로 구분
 - ① 주민숙원 사업 분야(읍면동별 5건 이하) 선정
 - ② 재정운용 전반 분야(건수 제한 없음) 선정. 해당 읍면동 숙원사업이 아닌 천안시 전체에 효과를 미치는 사업으로 제한
- 주요 운영절차
 - 1차 : 분야의제 설정(우리동네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 2차 : 분야별 사업 만들기(사업 구체화하기)
 - 3차 : 제안 사업 선정하기

■ 참여예산 설문조사

- 방법
 -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설문조사 및 사업제안메뉴 등록
 - 시청 내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창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 운영
- 설문내용
 - 시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만족도 조사
 - 주민참여예산제 관심도, 만족도 등에 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등

■ 주민제안사업 선정

- 지역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상정된 요구사업에 대하여 분과별 의제설정
- 운영과정
 - 1차 : 분과별 임원 선출 및 의제 설정
 - 2차 : 분과별 사업 만들기
 - 3차 : 분과별 제안 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한 회의와 토의를 거쳐 참여예산 사업을 만들고 다듬는 과정으로 운영



- 5개 분과위원회(생활환경, 복지, 문화체육, 농업축산, 건설교통)의 의견수렴 절차
 - 지역회의 등에서 상정된 요구사업에 대하여 분과별 의제설정
 - 설정 의제에 대한 사업만들기 토의
 - 요구사업 선정

■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 운영

- 관내 14세~19세 청소년 중 희망자 신청접수하여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 내용
 - 청년이 행복한 예산정책 만들기
 - 1차 - 참여희망자 모집(6월~7월)
 - 2차 - 교육 워크숍 실시(6월~7월)
 - 3차 - 그룹별 예산정책제안대회(8월)
- 시상 : 5개 제안서 채택 및 시상(총 시상금 : 1,500천원)

■ 청년특별위원회 운영(안)

- 구성 : 10~15명 (1979년생~2000년생)
- 모집 : 천안 소재 대학·시민단체에 공문 발송(천안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청년몰 등)
- 내용 : 청년이 행복한 예산정책 만들기

■ 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링

- 대상사업 : 주민참여예산지원단과 협의 결정

- 내용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계획, 추진경과 등 관리
 - 제안내용과 사업진행과의 일치여부, 효과성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00명 이내 구성
 - 공개모집 : 60명, 지역회의 추천 : 30명, 의회 추천 : 10명
 - 모집은 시홈페이지 온라인접수 및 읍면동 방문접수 등
 - 공개모집 인원이 60명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기능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 재정전반 요구사업 선정

■ 읍면동 지역회의

- 30개 읍면동별 20~100명을 천안시홈페이지 온라인접수 및 읍면동 방문접수 등을 통해 구성.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등

■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학교,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 그밖에 지원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청소년 예산 정책제안대회 개최 지원)

■ 예산학교 운영

- 운영방법
 -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운영
 - 지역의제 발굴, 주민제안서 작성, 회의 진행 등 실습위주 교육필요
 - 담당공무원에서 위원회 위원까지 전문능력 배양 목표
 - 단계별 예산학교를 통한 체계적 운영

단계별	교육대상	교육내용
제1단계	담당공무원	지역회의 운영요령
		참여예산제 개요 및 지역회의 모의 운영
제2단계	위원회위원	참여예산제 개요 및 위원회 모의 운영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공모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공모사업의 한도를 정하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음
- 단순 사업 공모 및 선정을 넘어, 분야별 사업 만들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참여예산 편성 요구사업 선정
- 지역회의를 활성화하여, 수렴된 의견의 대표성을 높이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편성 이외의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예산학교의 교육대상을 담당공무원, 지역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하여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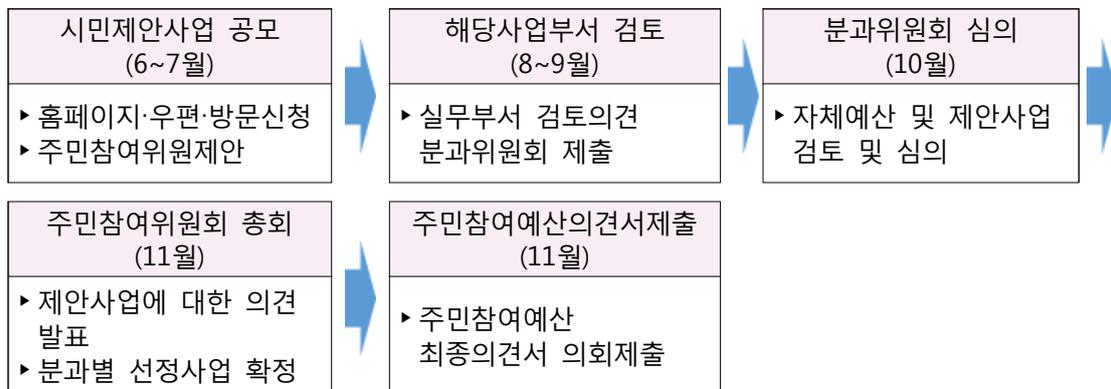
2) 공주시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시민 제안사업 :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시민공모
-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 읍면동 지역위원회 선정 (농로·마을안길 포장, 농·배수로사업, 공동주택지원, 경로당물품 지원)
- 당초예산안 중 자체사업(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5억원 이상 시설비

■ 시민 제안사업

- 대상사업 :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인센티브 제공 : 「공주시 제안제도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표창 및 상금 제공
- 운영일정



■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 대상사업 : 농로·마을안길 포장, 농·배수로사업, 체육시설지원, 공동주택 지원, 경로당 물품지원 등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읍면동 규모에 따라 3~4억원 한도 내
 - 경로당물품지원 : 복지지원과 지원 기준에 따름
- 운영일정 : 읍면동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지역위원회 운영



■ 당초예산안 중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대상사업 : 2019년 당초 예산안(시 자체사업) 중 5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방법
 - 분과위원회 별로 해당 부서 팀장이 사업설명
 - 각 분과별 사업설명 청취 후 사업별 적정여부 의견수렴
 -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상정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운영방법
 -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우수자치단체 운영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동지역 시범운영)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과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인원은 60명 이내 구성, 현 40명
 -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공개모집,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예산·행정 전문가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 검토, 의견제출

- 각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의, 의결
- 2개 분과위원회 운영(행정복지 20명, 산업건설 20명)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부의하는 제안사업 등에 대한 검토 및 투자사업 선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고 및 상정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 읍면동별 20~30명 내외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공개모집에 신청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태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 기타 시 발전을 위한 사업제안 등

■ 주요 특징

- 제안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운영함
- 자체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예산안검토의 실효성을 제고함
-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선정의 주민대표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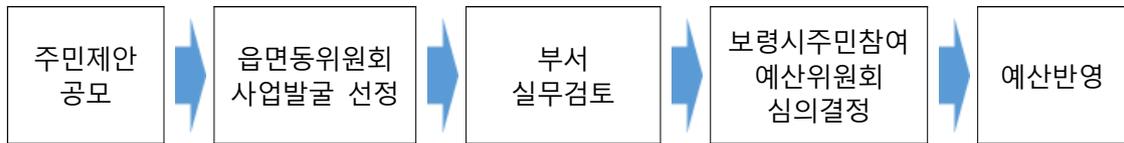
3) 보령시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주민제안사업 32억원(읍면동당 2억원)
 - 읍면동장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 주민제안 생활밀착형 공감사업 1억원
- 시 홈페이지 공모를 통한 의견 수렴
- 읍면동위원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

- 제안대상
 - 소규모 생활불편 및 여성, 어린이, 어르신 안전시설 사업
 - 주민쉼터, 놀이터, 꽃동산, 보행로, 등산로, 벽화거리 등 시민편의사업(주민생활 밀착형 공감사업)
- 주민제안사업 예산: 건당 2천만원 이내 단년도 사업
- 운영절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30명 이내로 구성
-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16명,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기능
 - 읍면동 위원회에서 부의한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심의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주민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16개 읍면동, 389명)
- 기능
 -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심의 후 위원회에 부의
 -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

■ 주민참여예산 교육

- 대상 : 시 및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동 부면장·총무팀장, 담당자
- 내용
 - 예산편성과정, 주민 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실무 등에 관한 내용

■ 주요 특징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읍면동당 2억원 할당

4) 아산시

■ 주민참여 범위

- 일반회계 본예산 사업 중 자체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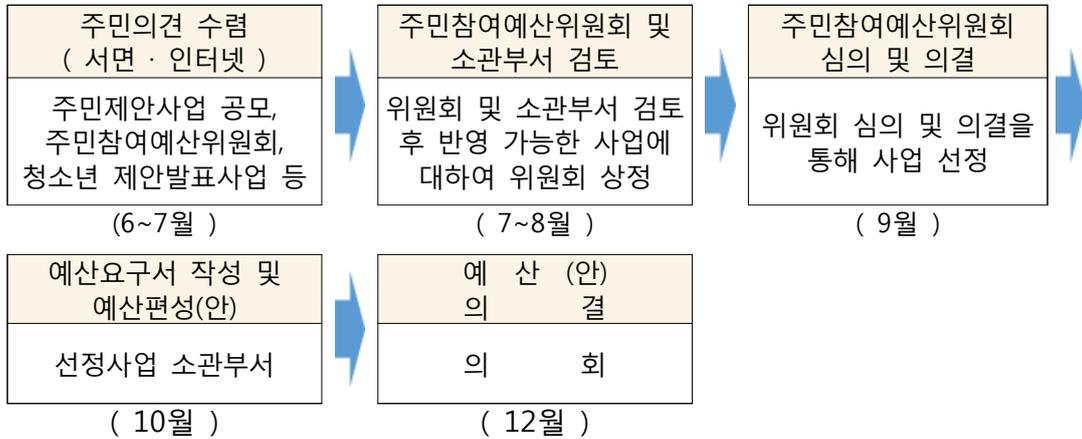
■ 주민참여 방법

-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한 의견 수렴
-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 서면·인터넷접수(방문, 우편, 팩스 등)를 통한 의견 수렴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아산시민 대상으로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대상사업 : 시민 대다수가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 수혜의 범위가 특정지역(읍·면·동)에 국한되는 사업은 제외
 - 기존에 사업화되지 않은 참신한 사업
 - 대표 관광지 및 대규모 체육시설 관련 사업 등
- 방법 : 서면·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활용방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
- 운영 절차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분야 정책에 관한 토론과 제안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내실 마련
- 대상 : 관내 청소년 40명 내외
- 내용 : 참여예산학교, 제안사업 발표, 참여위원회 등(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참여위원회와 연계하여 추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60명으로 구성
 - 추천 : 30명(읍면동 17명, 시장 8명, 의회 5명), 공개모집 : 30명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검토 등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총무복지분과위원회와 산업건설분과위원회의 2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 예산학교 운영

- 교육대상별 맞춤교육
 - 공무원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 일반주민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제안사업 공모 참여 요령
 - 위원회 위원 : 위원의 역할 및 제안서 작성법, 의제 발굴, 회의 진행 등 실습위주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공모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5) 서산시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 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단순 민원성격의 비 예산 사업,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등은 제외
- 주민참여 방법
 -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수렴
 - 주민토론회, 지방재정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접수 : 시 홈페이지·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민원실 접수
- 공모분야 :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주변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 운영 절차
 -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참여자 학습과 적용 실습으로 주민의 참여역량 증진
-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청소년, 공무원 등
- 운영방법 : 지방재정분야 전문기관 위탁으로 추진
- 내용
 - 시 재정현황 및 예산 기초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 지역사업 발굴 및 서산시 공통사업 발굴, 시민의견 모으기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분야 정책에 관한 토론과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미래세대의 시정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함양
- 대상 : 관내 청소년 40명 내외
- 내용 : 참여예산학교, 제안사업 발표, 참여위원회 등
- 운영방법 : 공개모집,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 위원 참여, 청소년 제안사업 공모신청 접수

■ 주민참여예산 주요사업 『현장 모니터링』 운영

-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
- 대상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주요 대규모 사업
- 주요내용 : 참여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현장확인 점검
- 주요 검토내용
 - 당초 제안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 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적정성, 사업 효과 분석 등
 -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민원이나 문제점 발생 여부

■ 주민 토론회 활성화

- 대상 : 주민간 이해관계 대립 및 폭넓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
- 운영방법 : 사업부서, 읍·면·동장 지역주민과 협조 주민토론회 개최

■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를 통한 시민 관심도 제고

- 시기 : 2018. 하반기
- 내용
 - 지방재정공제회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 유치
 - 전문가 진단을 통해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모색
 - 공무원은 물론 다수 시민의 참여 유도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대상 : 읍면동 주민
- 내용
 - 2018년도 서산의 재정현황 및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 예산용어, 예산과정 등 설명 및 절차 교육
 - 주민참여예산제 및 우수사례 소개 등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계획

- 홍보매체 : 홍보 캠페인, 홍보물 배부, 찾아가는 예산학교, 거리 현수막 및 현판, 인터넷 신문·방송, 언론사 등, SNS, 각종 간행물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0명 이내로 구성
 - 15명 : 읍면동장 추천, 5명 : 사회단체 추천
 -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능

- 기능
 - 주민을 위한 사업제안 공모 의무화 및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검토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
 - 주민을 위한 사업 제안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구분	주민참여예산워크숍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산교육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시기	2018. 상반기(연1회)	2018. 상반기(연1회)	2018. 5월중
참석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담당공무원
내용	예산위원 역할정립 및 역량강화 특강 등	위원들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SNS(페이스북, 밴드) 활용교육	참여예산제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방문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공모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 청소년 참여예산제, 주민 토론회, 지방재정 세미나 등 운영
-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집행 과정으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6) 논산시

■ 주민참여 예산 범위

- 주민(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

-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
-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 주민에게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 비권장사업 : 주민의 참여 없이 상품의 구매나 시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주민 민원 성격의 시설사업, 행사성 사업

■ 주민참여 방법

-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발표대회를 통한 마을 공동체사업 활성화
- 읍면동 사업 시작에서 집행과정까지 주민자치위원, 사업제안자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실행

■ 주민제안사업 운영

- 접수 : 시 홈페이지, 읍면동, 시 분청
- 공모분야 : 읍면동 발굴사업, 읍면동 권장형 사업, 시 권장형 사업
- 운영 절차
 -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전, 제안된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담당 사업부서에 사전 타당성 검토 의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사업별 심의 후 전체회의 상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과 검토 및 분석

- 목적 : 전년도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결과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당초 의도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파악
- 추진기간 : 1월 ~ 2월
- 내용 : 읍면동별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검토 및 분석

- 추진방법
 - 사업제안자의 날인 혹은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들의 의견 등이 들어간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발표대회 추진

- 기간 : 2018. 7월
- 참여대상 :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 발표자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 경연방법
 - 지역회의에서 심의한 사업에 대한 발표 : 사업수 제한 없음
 - 발굴사업에 대한 공유로 마을 공동체사업 활성화
- 결과 활용
 - 우수 사례 최우수 읍면동에 대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배정(총 1억)

■ 시 권장형 사업 발굴 읍면동에 대한 예산 차등 편성

- 권장형사업 발굴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 차등 배정

■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 읍면동 사업 시작에서 예산 집행과정까지 주민자치위원, 사업제안자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실행
- 편의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방지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안)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집중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교육을 지역회의 위원, 이장단, 부녀회장, 공직자 등으로 넓히고자 함
- 대상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이장단, 부녀회장, 공직자 등
- 교육내용
 -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 편성 절차, 향후 주민참여예산 발전 방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50명 이내로 구성
 - 시장 추천 10명 이내, 지역위원회 추천 30명 이내, 시의회 추천 5명 이내, 비영리 민간단체·학계 추천 5명 이내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행정자치분과위원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의 2개 분과 운영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50명 이내 구성
 -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지역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주요 특징

- 시 사업부서 추진사업과 읍면동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 발표대회를 통한 상사업비, 권장형 사업을 발굴한 읍면동은 주민참여예산액 차등 분배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이를 통해 읍면동별 차별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함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과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

산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이외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실시함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화 유도
- 읍면동 지역위원 및 지역리더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식을 제고 하는 계기를 마련함

7) 계통시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전체 예산액(차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의 1% 범위 내 주민제안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회의 등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및 제안사업 접수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전반에 관한 설문 실시
 - 시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 주민제안사업 공모

- 방법 : 온라인(시홈페이지), 서면(시청 및 면·동사무소 방문, 팩스 등)
- 제안분야
 - 인구증가 시책, 도시경관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생활 주변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 운영절차



■ 면·동 지역회의 운영

- 운영방법 : 이·통장 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로 대체
- 주요내용
 - 이·통장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참여 회의 시 제안사업 발굴
 - 市발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 발굴
 - 지역회의 제안사업은 사업별 우선순위 부여하여 예산부서에 건의

■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 내용 : 예산서 전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지역발전을 위해 분야별 중점 및 우선 투자 대상사업 주민 선호도 조사
 - 주민참여예산 공모 신청서 접수와 병행
- 방법 : 온라인(시홈페이지), 서면(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
-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분석자료 시의회 제출

■ 주민대상 교육 및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실시 : 연 1회(상반기)
- 대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면·동 지역회의 위원, 담당자 등
- 내용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등
-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시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시청 민원실 및 면·동 사무소 홍보 및 접수 창구 운영, 시정소식지, 아파트 홍보문, 지역언론 게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공개

- 시기 : 예산(안) 확정 후 (2019. 1월)
- 방법 :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주민참여예산」)
- 주요내용 : 주민 제안사항의 예산 반영결과 공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5인 이내로 구성
 - 시장추천, 면·동장 추천, 계룡시의회 추천,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 지역회의를 통한 제안사업 발굴

8) 당진시

■ 주민참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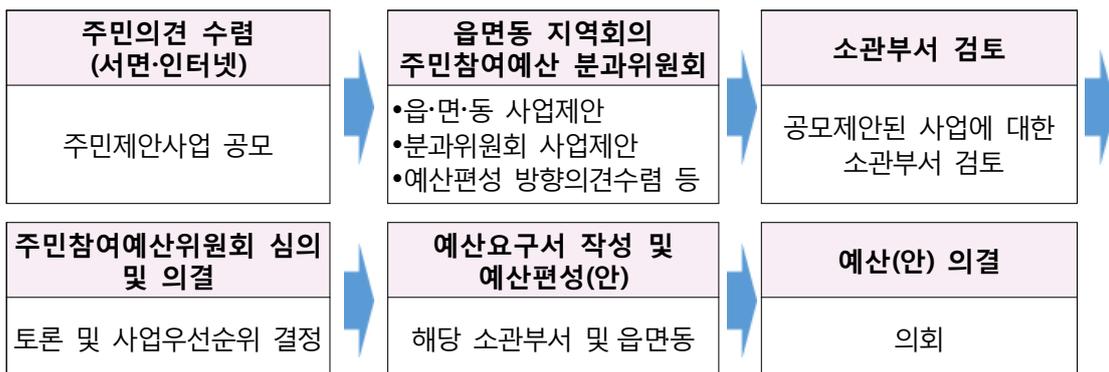
- 일반회계 자체재원
- 주민참여예산 재원배분액 설정 : 10억원 미만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제안사업 공모전을 통한 의견 수렴
- 소규모 읍면동 단위인 지역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 운영

- 제안사업 유형
 - 시 정책영역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
 - 분과별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제안사업
 - 소규모 읍면동 단위 주민들의 사업
- 운영 절차



■ 주민제안사업 공모전

- 시민과의 정책소통 역할 수행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응, 우수 제안사업 발굴 및 적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공모분야 : 다수의 시민을 위한 단위사업
- 공모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포함) 또는 인터넷
- 활용방안 : 읍·면·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
 - 읍·면·동은 지역회의에서 주민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제안사업 선정
 -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제안된 사업 타당성, 실효성, 재원조달계획 등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을 통한 예산 반영

■ 2019년도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

-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 참여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포함) 또는 인터넷
- 내용 : 예산분야별 확대 및 축소 분야, 중점투자 방향, 기타의견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50명 이내로 구성
 - 공개모집절차 선정된 사람, 지역회의 추천, 시의회 추천, 시정 분야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의견 수렴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자치행정분과, 경제환경분과, 건설도시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 운영

■ 찾아가는“주민참여 예산학교”운영

-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참여방향 제시
- 충남도청의 순회 방문 교육 활용
- 대상 : 참여예산 및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일반시민(단체·청소년포함)

■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 20명 이상으로 구성. 단,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음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안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통한 사업 선정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사업 공모전을 실시
- 분과위원회 위원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9) 금산군

■ 주민참여 범위

- 예산편성단계
- 본예산 일반회계(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제외)
 - 금산군 중·장기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각종 시책 사업의 개선 및 요구사항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방안
 - 기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등
- 제한 사업
 - 목적재원(국고보조, 특별교부금 등), 법정경비(분담금 등) 등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의견 제시가 아닌 단순한 비판 또는 비방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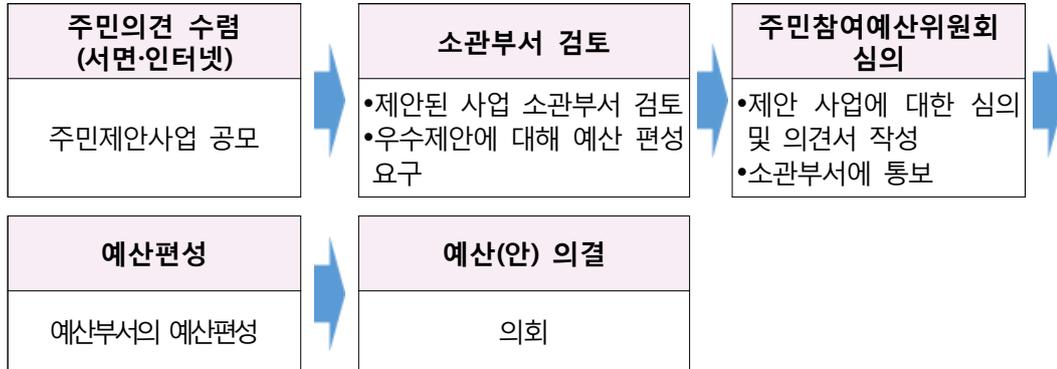
■ 주민참여 방법

-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 의견제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메뉴
- 기획감사실 예산팀 직접 전달 또는 팩스 송부

■ 주민제안사업 운영

- 공모방법 : 온라인(e-mail) 및 오프라인(우편, 팩스 등) 제출

- 운영 절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30명 이내로 구성
 - 군수 추천, 읍면장 추천, 군의회 추천
 - 임기는 2년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운영
 - 예산편성 전 후 등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 운영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공모 이외의 주민참여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전체적으로 제도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임

10) 부여군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제한없이 편성. 단, 인건비 및 법정경비 제외

-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군 홈페이지 참여예산방을 통한 의견수렴
-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사항 의견수렴

■ 읍면 순방으로 군민과의 대화 및 건의사항 수렴

- 16개 읍면 순방 중 군민 제안(공모)사업 건의
- 담당부서 현지 실사 확인 및 사업 반영 여부 검토

■ 군 홈페이지 『예산편성 참여』 운영

- 주민제안사업 참여 및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수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 및 예산 반영 여부 검토

■ 설문조사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예산 편성 방향 설문
- 방법 : 인터넷, 전화 및 서면설문
- 홍보 : 홈페이지, 부여소식지, 보도자료 및 현수막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5명 이내로 구성
 - 군수 추천, 군의회 추천, 공개모집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제안(공모) 사업 건의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그 밖의 예산편성 및 분과위원 운영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2개 분과위원회 운영(총무분과위원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회의, 군민 등
-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이해 및 참여방안 등

■ **주요 특징**

- 주요한 주민의견 수단인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틀을 정립해나가는 과정
- 읍·면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

11) 서천군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 주민제안사업, 부서별 핵심과제 사업, 사업비 3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
 - 10억원 한도 내에서 주민제안사업 공모
 - 부서별 핵심과제사업과 사업비 3억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 방법
 - 군민 제안사업 공모를 위해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의견 수렴
 - 집행부의 부서별 핵심과제사업과, 3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의견제출
 - 예산편성 방향 수립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1,000명)

■ **군민 제안사업 공모**

- 개요
 - 10억원 규모 실링제 도입 및 반영 제안에 대한 포상 지원(피드백 강화)
- 공모대상
 - 주민소득 창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주민수혜도 및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국한된 사업, 경로당 물품 구입, 기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 확정된 사업은 제외
- 공모방법 : 온라인(e-mail) 및 오프라인(우편, 팩스 등) 제출
- 공모절차



- 평가방법
 -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5단계 등급별 평가
 -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예산 반영 검토
- 우수 제안(예산 반영)에 대한 제안자 포상(건당 5만원 이내)

■ 집행부 사업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부서별 핵심과제사업과 사업비 3억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별 심의
-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
- 필요시 현장점검

■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 공무원 및 일반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서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내용 : '1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0명으로 구성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 총무분과, 산업건설분과의 2개 분과위원회 운영
 - 분과별 신규시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의견제시와 우선 순위 확정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 간담회 운영

- 2017년까지 ‘찾아가는 예산학교’ 형태로 운영
 - 연 평균 10회, 352명의 읍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여성 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운영목적 : 직접 주민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근거, 서천군 재정 현황, 주민참여예산 공모계획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어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확립에 기여
- 청년, 여성(임산부 포함),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수가 직접 방문·진행하는 「찾아가는 예산 릴레이 간담회」 개최
 - 기존 “설명” 중심의 학교에서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확대 운영
 - ① 해당 대상 그룹별 2018년 우리군 예산 편성 현황 설명
 - ②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소통
 - ③ 주민제안 공모계획 및 참여방법 등 안내
- 7월 ~ 8월 사이 5회 이상 운영

■ 군민참여예산제 홍보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제안 포스터(안) 확정 및 제작·배부(전 부서 및 읍·면, 주민 밀집지역 등)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운영 계획, 실적 등 군 홈페이지 상시 게시 및 의견 수렴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였으나, 2018년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 예산안의 심의 방식과 예산학교를 대대적으로 개편함
- 특히, 기존의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 간담회’로 변경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함
-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중점투자부문 등 예산편성 방향 선호를 조사하고 있음
- 주민제안사업의 접수건수가 적고 반영액수 또한 크지 않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홍보나 활성화가 필요함
- 주민제안사업 대상을 주민 수혜도와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12) 청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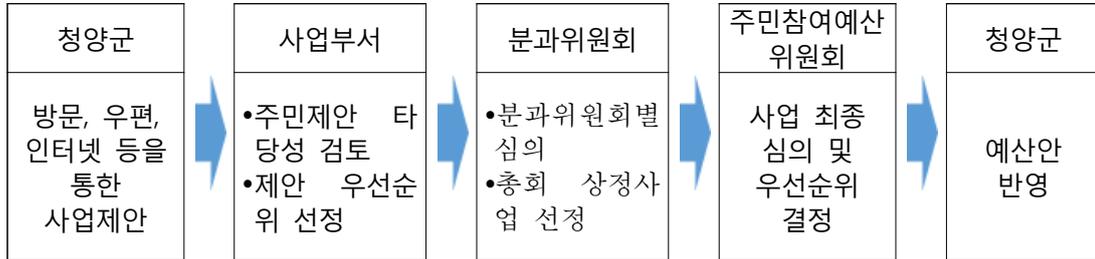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본예산 자체사업
- 방문,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제안 신청 및 설문조사
- 주민의견제출 범위
 - 19년 회계연도의 본예산 중 군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 분야·부문별 중점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
 -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 주민제안사업 운영

-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제안
- 대상사업
 - 군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제안(특정단체, 법인 배제)

- 운영절차



■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 각 부서 주요 자체사업계획에 대한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 예산학교 운영

- 참여예산위원, 일반 군민에게 청양군 재정 및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와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
- 참여대상
 - 의무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 및 서무·경리 담당공무원
 - 자유참가 : 일반군민 등 희망자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 청양군 재정여건, 예산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의견 제안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습
 - 주민참여예산 사례 소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30명 이내 구성
 - 공개모집, 읍·면장 추천, 군의회 추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재정·예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 임기는 2년

- 기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및 군민이 제안한 주민제안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
 - 주민 및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 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행정·복지, 농업·경제, 건설·도시·환경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구성·운영

- 10명 이내 구성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워크숍 개최
 - 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
 -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주민참여 예산편성·조정
 -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추진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의 대상을 군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한정
- 주민제안사업 건수가 적어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 저하
-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추천위원 비중이 높음

13) 홍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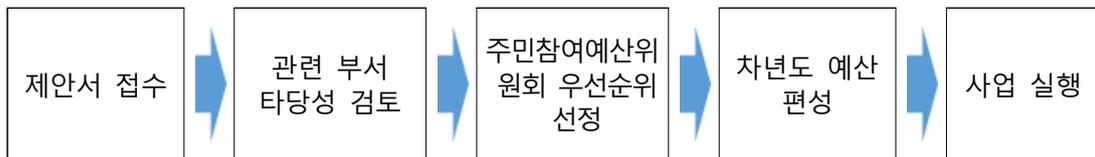
■ 주민참여 범위와 방법

- 전체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민제안사업
 - 주민제안사업은 효과가 주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제안사업 접수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 제안사업 운영

- 홍성군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사업제안서 접수
- 각 부서별 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선정
- 사업에 대한 득표결과 발표 후 10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반영 여부 결정



■ 주민설문조사

- 대상 : 600명 (주민참여예산 위원 26, 홍성군민 574)
- 조사방법 : 인터넷 및 서면
- 조사내용 : 주요시책·투자부문 등 예산편성 방향 설문조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35명 이내 구성
 - 2분의 1은 공개모집, 읍면장 추천, 예산·행정 전문가로 실·과장 추천, 군의회 추천
 - 임기는 2년
- 기능
 -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 예산정책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총무분과와 산업건설분과의 2개 분과위원회 운영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참석대상 : 200명(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등)
- 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된 분야 우선 교육실시

■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과 설문조사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있음. 그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은 민원성 사업 위주로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추천위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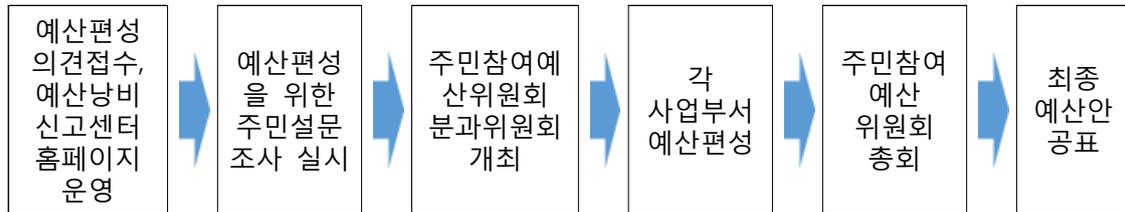
14) 예산군

■ 주민참여 범위

-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제한없이 편성
- 주민참여 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군 홈페이지 참여예산방을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서(사업제안서) 제출
 -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사항 의견 수렴 등

■ 주민참여 절차

- 홈페이지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접수
- 접수된 주민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의 의견은 예산부서를 거쳐 사업부서에 전달되어,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전체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해 심의 후 결정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 관내 거주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관내 거주하는 0세~12세 자녀를 둔 주부(예산맘), 주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 4월~5월 중 2~3회 실시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청소년 및 예산맘 참여예산제안 및 토론
 - 2018년도 추경예산 및 2019년도 본예산 반영

■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인터넷, 군 민원봉사실 및 읍면 민원실을 통한 서면조사
- 조사내용
 - 지역발전을 위해 분야별 중점 및 우선 투자 대상사업 주민 선호도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카드 접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0인 이내 구성
 - 공개모집, 군의회 추천, 읍·면장 추천
- 기능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 제안사업 최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반영 요구
- 행정복지분과와 산업건설분과의 2개 분과위원회 운영

■ 주요 특징

- 청소년과 주부를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예산을 만들어 예산편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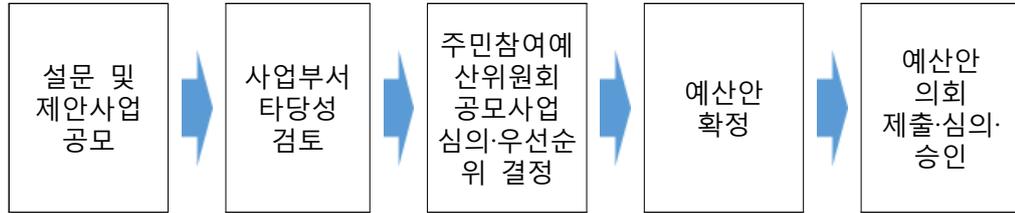
15) 태안군

■ 주민참여 방법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통해 의견 수렴

■ 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설문 및 제안사업 공모

- 기간 : 2017. 8. 14. ~ 9. 4.(20일간)
- 조사항목 : 12개 분야 문항
 - 현재까지 재정 성과에 대한 만족도
 - 앞으로 재정지출 조정방향(중요도)
 - 제외분야 : 인건비, 법적경비, 보조사업과 일부지역의 단체 및 개인에게 국한된 사업 등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 제외(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 공모방법
 - 지면을 활용한 공모
 -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군·읍면 민원실 및 각 부서 설문지 배부조사
 - 읍·면별 지역리더(이장,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설문지 읍·면 배부
 - 설문목표 : 500명 이상
- 조치사항
 - (기획감사실)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 종합분석
 - (사업부서) 사업 타당성 검토분석, '18년 예산편성 요청
 - (위원회) 부서별 검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외사업 심사
 - (기획감사실) 심사결과 군수 방침확정 후 '18년 예산편성(안) 반영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주민설문 등 운영상황 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문제점 보완 조치



■ 예산학교 운영

- 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 이장단협의회회장·개발위원장·주민자치위원장
- 내용
 - 태안군 재정현황 소개
 - 성인지 예산의 이해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사례, 주민 참여방법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5명 이내로 구성
 - 공개모집, 군의회 추천, 읍·면장 추천, 예산·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임기는 2년
-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주요 특징

-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못함

3. 시군 현황의 주요 특징 정리

■ 주민참여예산제 기구

-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반인 참여예산 기구를 조사한 결과, 운영기구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그리고 청양군은 5가지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그에 반해, 금산군은 1개의 기구만 운영하고 있고, 태안군과 서산시는 2개의 기구만을 운영하고 있음
- 기구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5개 시군에서 모두 설치되어 있고,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을 제외하고 모두 조례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참여예산위원수는 시군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참여예산 활동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위원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 다수의 참여예산위원이 구성될 경우, 다양한 활동을 여러 분과로 나누어 분담 추진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는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동이 분과위원회별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표 5]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기구 현황

시·군	조례제정	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조정협의회	연구회/지원조직	예산학교
			위원수	1만명당	1백억당					
천안시	2011.9	○	100	1.6	0.8	○	○		○	○
공주시	2011.8	○	60	5.5	1.2	△	○		○	○
보령시	2011.11	○	30	2.9	0.5		○			○
아산시	2011.12	○	60	1.9	0.7	△	△		△	△
서산시	2006.7	○	20	1.2	0.3					□
논산시	2007.1	○	50	4.1	0.8	△	○		○	△
계룡시	2011.9	○	15	3.4	1.1		□			□
당진시	2012.1	○	50	3.0	0.8	○	○		○	△
금산군	2011.7	△	30	5.6	0.9					
부여군	2011.8	○	25	3.6	0.6	□	□			○
서천군	2011.9	△	20	3.6	0.5	□			△	□
청양군	2011.10	○	30	9.1	0.9	○		○	△	○
홍성군	2007.7	○	35	3.4	0.7	△	□		△	□
예산군	2007.6	○	20	2.5	0.4	△				△
태안군	2011.8	△	25	3.9	0.7					△

주1) ○는 조례상 의무규정, △는 조례상 선택규정, □는 운영계획상 현황.

주2) 2018년 7월 기준 현황임.

- 지역회의는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시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기능은 지역회의에서 수행됨
 - 지역회의가 활성화될수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과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민의견의 대표성이 높아짐
- 민관조정협의회는 청양군 1개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인 연구회 또는 다른 지원조직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등 8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지원조직은 시민사회나 전문가조직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 설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주변 지역과 공동으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거나 도 예산연구회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음

-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은 자치단체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수준이 발전된 지역에서는 대상별 맞춤형의 교육이 실시되는데 반해, 운영수준이 초기단계인 지역에서는 전체 대상에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됨
 -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화되지 못할 수 있음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의운영 또는 사례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교육이 1회에 모든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맞춤 교육이 여러 차례 실시되어야 함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와 연계하여 예산학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6] 충청남도 시군 예산학교 운영 현황

시·군	시기	교육대상	교육내용	운영방법
천안시	6~7월	담당공무원	지역회의 운영요령, 참여예산제 개요 및 지역회의의 모의 운영	전문가 초빙 강의 및 모듬활동
		위원회 위원	참여예산제 개요 및 위원회 모의 운영	충남도 예산학교 연계 또는 타지자체 우수사례 활용
공주시		일반 주민	주민참여예산제 및 우수자치단체 운영사례 등 설명	읍면동 기관단체장 회의시 교육병행, 주민참여예산 담당자가 교육
보령시	10월	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부면장·총무팀장, 담당자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실무	주민참여예산제 전문가 초빙
아산시	6월	공무원	참여예산제도 강의	
		일반주민	참여예산제도 강의 및 제안사업 공모참여 요령	
		위원회 위원	위원의 역할 및 제안서 작성법, 의제발굴, 회의진행 등 실습 위주 교육	
서산시	7~8월	읍면동 주민	서산 재정현황 및 참여예산제도 강의, 예산 설명, 참여예산제 우수사례 소개	읍면동 방문 교육, 현장의견수렴 병행

시·군	시기	교육대상	교육내용	운영방법
논산시	2~3월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이장단, 부녀회장, 공직자 등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 편성 절차, 발전방향	월례회의 후 공직자 대상 교육, 시민 대상으로 대규모 장소에서 집합교육
계룡시	상반기	참여예산위원, 면·동 지역회의 위원, 담당자 등	주민참여예산 및 운영계획 등	충청남도 예산연구회 전문가 초빙
당진시	6월	참여예산 위원, 지역회의 위원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위원의 역할, 의제발굴 요령 등	충청남도 예산학교 활용,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
		일반시민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주민참여 방법 등	
금산군				
부여군	하반기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회의 위원, 군민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이해 및 참여방법 등	
서천군	7~8월 중 5회	청년, 여성(임산부 포함),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① 해당 대상 그룹별 2018년 우리군 예산 편성 현황 설명, ②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소통, ③ 주민제안 공모계획 및 참여방법 등 안내	군수가 직접 방문·진행하는 「찾아가는 예산 릴레이 간담회」
청양군	1월	참여예산위원, 서무·경리 담당공무원, 일반군민 등	청양군 재정 및 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참여예산 운영 실습, 국내외 사례 등	주민참여예산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홍성군	4~9월	참여예산위원, 읍면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된 분야 우선 교육	외부강사 초빙
예산군	4~5월 2~3회	청소년, 예산맘, 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청소년 및 예산맘 참여예산제안 및 토론과 병행
태안군	8월	참여예산위원,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개발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태안군 재정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성인지예산 등	외부강사 초빙교육(2인)

주) 2018년 7월 기준 현황임.

■ 주민참여 수단

- 15개 시군의 주민참여 방법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채택하고 있음
 - 이는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일반적인 주민참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세부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실제 예산사업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홍보, 접수 방식, 사업화 등의 과정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
 - 대표적으로 천안시, 논산시 등은 지역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참여예산위원회와 사업부서의 검토 및 속의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을 사업화하는 등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주민제안사업의 유형을 소규모 주민밀착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표 7]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수단 현황

시·군	설문조사	주민제안사업 공모	예산안 검토	예산집행 모니터링	참여예산사업평가	청소년 제안	참여예산제도평가	기타
천안시	○	○		○		○	○	청년특별위원회
공주시		○	○					
보령시		○						
아산시		○				○		
서산시	○	○		○		○	○	시민회의, 주민토론회, 온오프라인 홍보
논산시		○		○	○		○	발굴사업 발표대회
계룡시	○	○						홍보활동
당진시	○	○						
금산군		○						온오프라인 홍보
부여군	○	○	○					군민과의 대화
서천군	○	○	○					온오프라인 홍보
청양군	○	○						
홍성군	○	○	○					
예산군	○	○						
태안군	○	○						

주) 2018년 7월 기준 현황임.

- 주민제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지역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임
- 주민대상 설문조사 또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주민참여 수단으로 나타남
- 주민제안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반해,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는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이유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주민참여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집행과 사업평가 과정까지 확대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는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참여예산제도평가 체계를 갖추
- 이외에 청소년특별위원회, 발굴사업 발표대회 등 기타 주민참여 수단 등이 활용되고 있음

■ 개선과제 및 시사점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 수준이 낮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참여기구와 참여수단 등 운영현황에서 있어서 시군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천안시, 논산시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상당한 제도발전을 이룬 반면, 금산군, 태안군 등은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임
- 시군의 제도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평가제 마련시, 자치단체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군지역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와 군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함
 - 절대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노력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산시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양군은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개선노력을 보이는 지역에는 절대적인 지표가 미진할지라도 정성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예산의 비율을 제고하여야 함
 - 주민제안사업 공모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됨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 시·군에서 예산학교 운영을 광역도 예산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군에서 일반 주민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할 때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방법을 소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광역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활용을 권유하여야 함

제4장 사례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대상별 사례조사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종합

제1절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광역도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식에 대한 탐색
- 효율적인 주민제안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조사
-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사례조사

■ 조사대상

- 2018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체계성, 정교성 등에서 자치단체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기구 현황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8]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기구 현황

자치단체 유형	위원회					
	참여예산 위원회	분과 위원회	지역 회의	민관조정 협의회	연구회	기타
계	17	17	4	4	6	4
서울	○ / 300	○	○	×	×	○
부산	○ / 100	○	○	×	○	×
대구	○ / 100	○	×	×	×	×
인천	○ / 100	○	×	○	×	×
광주	○ / 100	○	×	○	○	×
대전	○ / 70	○	×	×	○	×
울산	○ / 70	○	×	○	×	○
세종	○ / 30	○	×	×	×	×
경기	○ / 100	○	×	×	○	○
강원	○ / 70	○	○	×	×	○
충북	○ / 60	○	×	×	○	×
충남	○ / 40	○	×	×	○	×
전북	○ / 35	○	×	×	×	×
전남	○ / 100	○	×	×	×	×
경북	○ / 80	○	×	×	×	×
경남	○ / 100	○	×	×	×	×
제주	○ / 80	○	○	○	○	×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정섭 외(2018) 재인용, 수정

- 광역도 뿐만 아니라 광역시 및 특별시를 사례조사 대상에 포함함
 - 이 연구의 목적이 광역도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구축이므로, 광역도만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광역도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는 광역도는 소수에 불과함
 - 반면, 광역시와 특별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다수 발견됨
 - 그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를 사례조사 대상에 포함함
- 다만, 광역시와 광역도의 사무권한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광역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춤
-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를 검토하여 광역도 운영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이 연구는 광역 시도 수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제주도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조사내용

-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기구 등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주요 요소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함
- 각 사례대상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기구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주요한 특징을 정리함
- 이를 바탕으로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시사점을 도출함

제2절 대상별 사례조사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1) 운영개요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제안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주민제안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숙의·공론화 과정을 마련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2) 주민참여예산 범위

- 형식적으로 시 전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이지만, 예산한도액이 설정된 주민제안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민제안사업은 700억원 규모의 예산 한도액으로 설정됨
- 주민제안사업은 크게 시정분야와 지역분야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후,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계됨

[표 9]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구성

구분	사업내용	운영 규모	사업심사 주체	성격
시정 분야	시정 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350억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정 협치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사업	100억원		
지역 분야	지역 참여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125억원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
	구단위 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 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75억원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 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사업	27억원	동별 마을계획단, 동회의 등	

자료: 서울특별시(2018),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p. 13.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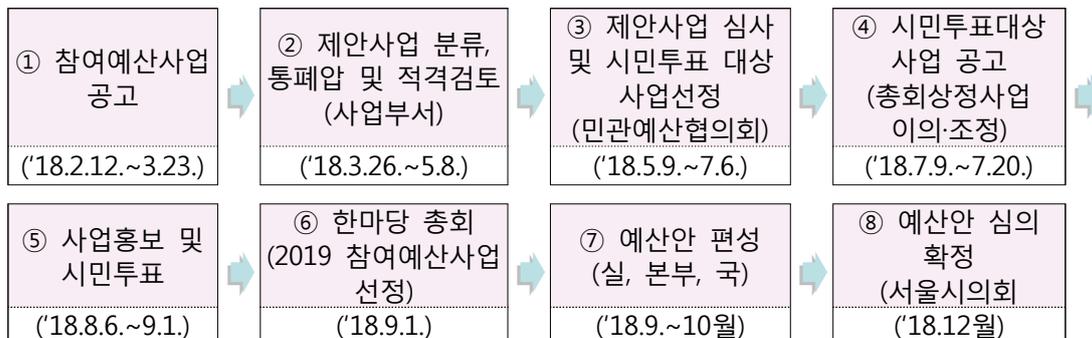
-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하고 지역분야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
- 지역분야의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시정 분야에 450억원, 지역분야에 227억원을 배정. 자치구와 마을단위 사업에 227억원을 배정하여 33.5%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했. 이를 통해 자치구 주민제안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3) 주민참여 방법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시정분야 주민제안사업은 서울특별시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사업으로 한정하고, 시정참여형 사업과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구분됨
 - 시정참여형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예산편성에 한정되는 반면, 시정참여형은 예산편성, 집행, 평가·환류의 전체 예산 과정에 참여
- 시정참여형 사업
 - 350억원 이내 규모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대상사업 :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 민간전문가, 사업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숙의, 토론을 통한 사업의 보완 및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짐

[그림 5] 서울특별시 시정참여형 사업 선정 절차



자료: 서울특별시(2018).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p. 14

-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주민주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3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함
- 주민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숙의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함. 컨설팅은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의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담 과정임
- 컨설팅단은 전 참여예산위원, 시민단체, 지역내 사회활동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컨설팅 1건당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됨. 그럼에도 컨설팅 활동이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시정협치형 사업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市사업부서(행정)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실행 전(全)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
 - 개인 단위로 지원할 수 없고, 주민대표회의와 같은 단체나 조직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재정분야 직접 민주주의 구현, 민·관의 협력을 통한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력 제고 및 시정의 신뢰성 확보 등의 복합적 목적 내포
 - 100억원 이내 규모

[그림 6] 서울특별시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절차



자료: 서울특별시(2018).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p. 47

■ 온예산 참여

- 시 전체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 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은 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 현재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원할 경우 1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문가 자문단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 지원
 - 의견서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에 전달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 예산편성 이후 시민과 참여예산위원 대상 설명회 개최하고, 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시민의견서를 최종 작성하여 제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중 온예산분과에서 수행
 - 총 75명 내외의 위원이 5개 분과로 나누어 수행
 - 5개 분과별로 1명의 민간전문가를 배정하여 예산분석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과정을 수행하도록 함. 민간전문가는 주민의견서 작성 작업을 지원함
- 온예산분과는 참여결산, 실·본부·국 예산 편성안·예산조정안·시의회 제출 전체 예산안 의견제시 등
 - 온예산분과의 의견은 개별사업별 의견이 아니라 주요 관심사업이나 쟁점사업에 대해 이루어짐

■ 참여예산사업 평가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상반기 : 과년도(2017년) 사업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사업효과성, 사업완료 여부 및 불용이월 등 평가 실시
 - 하반기 : 2018년 집행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방침서, 기타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제안취지, 집행을, 예산낭비요소, 민원 등 모니터링
- 평가실시 : 市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상·하반기, 연 2회)
- 평가에 대한 환류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적기 추진 권고

■ 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토론회

- 시민참여예산제 제도 운영, 사업 추진 등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과제 발굴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 참여예산위원회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중 온예산분과에서 수행

4) 주민참여 기구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 : 300인 이내
 - 275명은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추천
 - 연령, 성별, 지역(자치구) 간 균형 고려하여 무작위 추천
 - 25명은 시장·시의원 추천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 가능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의결 기능
 -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민관예산협의회, 기능분과, 홍보·교육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됨

[표 10]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구성

분과명	구성	기능
민관예산협의회 (10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0명 내외 · 10개 분야별 구성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분야별 27명 내외 · 각 분야별로 참여예산위원 20명 이외에 민간전문가 약3명, 사업부서팀장 약4명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능 :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온예산분과 (5개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5명 내외 · 5개 분야별 분과 구성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 주택, 경제일자리·행정 - 분과별 15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 온예산 참여 : 참여결산, 실·본부·국 예산 편성안·예산조정안·시의회 제출 전체 예산안 의견제시 등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중 우수 및 문제 사례 중심 심층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평가방식 간소화하여 위원 평가는 정성평가 중심 운영
홍보·교육분과 (1개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5명 내외 · 제도홍보 및 시민교육 전문 독립분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수집 -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교육 모니터링 등

자료: 서울특별시(2018).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p. 22. 수정

■ 예산학교

- 참여예산 위원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
- 대상 : 모든 서울특별시민, 서울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등
- 시민 누구나 편리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 운영
- 심화교육, 타 시민교육 연계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
- 예산학교 이수자에 대해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증
 - 예산학교 회원은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시 10% 투표권 행사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참여예산제도 발전·운영 지원
- 약 3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예산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3), 참여예산위원(16), 협치위원(2), 시의원(1), 공무원(4)
 - 참여예산위원회의 전 분과장 10명이 참석하도록 하여,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의 소통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능률성 향상 도모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252억원의 사업규모
-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으로 구분, 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은 자치구 자율로 선택하여 추진

구 분	대상 자치구	추진 방법
지역참여형	10개(예정)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심사·선정
구단위계획형	15개(예정)	구 협치회의에서 사업 심사·선정
동단위계획형	25개	동회의 등에서 사업 심사·선정

자료: 서울특별시(2018).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p. 24.

- 지역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주민참여는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한정됨
- 구단위계획형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참여형 사업의 성격을 내포하지만, 주민의 공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와 민관협력 문화 형성을 위해 민과 관의 공동운영이라는 조건이 전제됨. 또한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실행, 평가 및 환류의 모든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동단위 계획형 사업은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력 강화 및 민관협력 문화 형성을 위해 실시되는 주민제안사업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와 연계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참여예산사업비 차등 지원

유형	지역참여형(10개 구)			구단위계획형(15개 구)			동단위계획형
	상	중	하	상	중	하	
지원규모 (억원)	5.5	5	4.5	10.5	10	9.5	동별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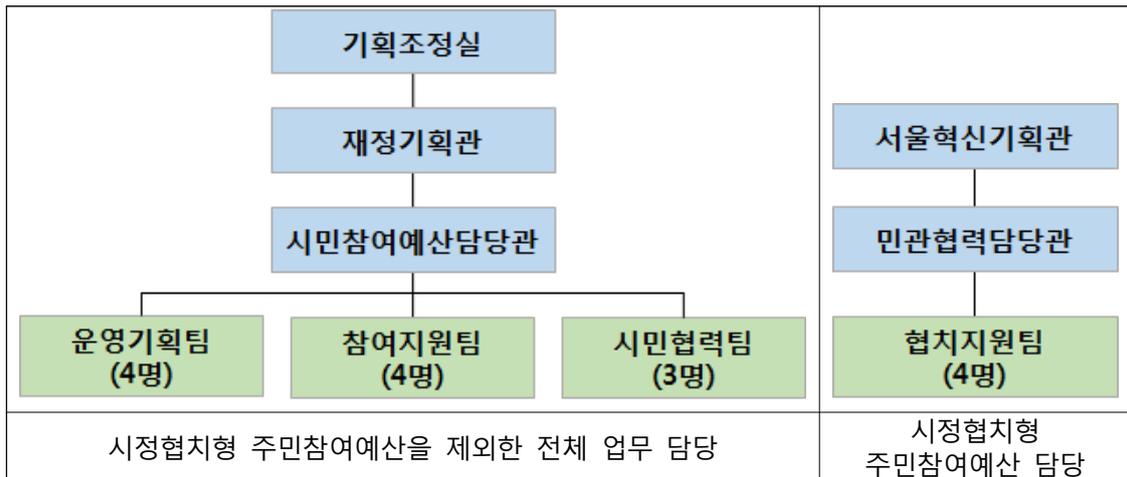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2018).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p. 24.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추진주체 : 市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 평가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10점) 점수 합산
 - 평가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제출, 사업추진

■ 주민참여예산 전담 행정조직 및 인력

- 서울특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함

[그림 7]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전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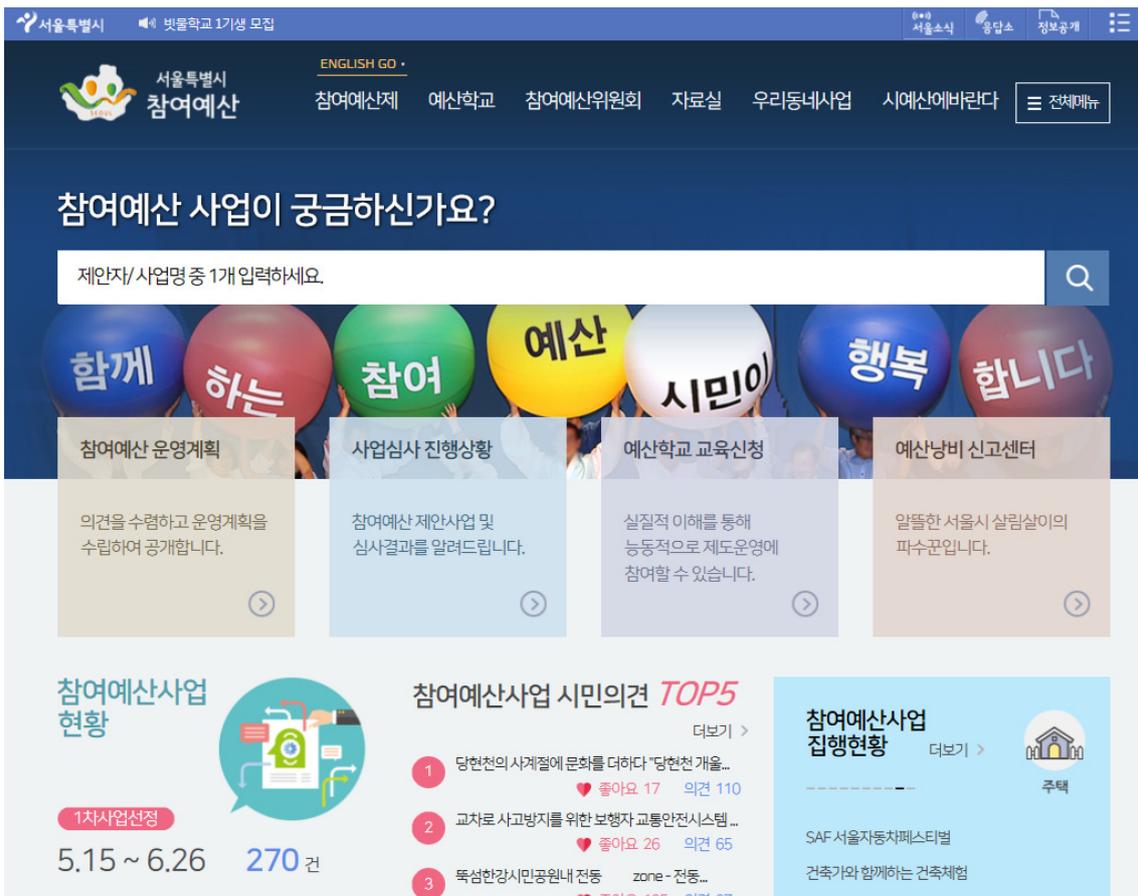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중 시정협치형 사업을 제외한 전체 주민참여예산 업무는 시민참여예산담당관과 운영기획팀, 참여지원팀, 시민협력팀의 3개 팀에서 수행됨
- 시정협치형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 아래 설치된 민관협력담당관의 협치지원팀에서 수행됨
-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은 서울참여예산담당관 1명과 예하 팀의 11명, 그리고 협치지원팀의 4명으로서 총 15명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서울특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

[그림 8]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개, 주민참여기구,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
-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공개하여 일반주민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5) 주요 특징

- 주민제안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따라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은 제한적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집중될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온예산분과가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제안사업 위주로 운영한 이유는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실효적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음
- 주민제안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임
- 광역단위 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사업의 유형을 시정분야와 지역분야로 구분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지역분야의 사업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도록 처리. 서울시는 광역 단위의 사업에 집중
 - 광역 단위에 적합한 사업은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한정
- 주민제안사업 심사는 사업부서의 검토, 민관협의회 심사, 사업내용에 대한 숙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총회 의결 등 정교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선정사업의 적합성, 공정성, 참여성, 민주성 등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함
- 주민들의 제안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
-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제안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제안자와 소관부서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컨설팅단’ 을 운영함
-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과정에서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에 대한 보완 및 구체화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주민제안사업이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깊이를 높임
-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시민참여” 라고 표기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주민제안사업 중 민관협력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을 설계하여 서울시에 민관협력 문화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력 강화를 도모함
-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참여방식을 활용하여 참여주민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주민제안사업을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함
- 청년·여성·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함. 즉, 기존의 권역별 교육에서 부문·계층별 교육으로 확대 추진
- 또한 교육이수자들로 형성된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참여예산제 홍보, 참여예산사업 발굴, 예산낭비 우려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 시 전체예산에 대한 검토는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여 실효성 제고함. 또한 전문가 자문단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을 지원함
-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 참여예산사업의 집행과정 모니터링과 사업평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편성 이외의 과정에까지 확대함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

6) 시사점

- 주민참여의 효능감이 높은 주민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전체 편성예산, 결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전략 구사 필요
- 주민제안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즉시 사업계획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제안서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사업담당 공무원이나 컨설턴트가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과정

- 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
-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이상으로 확대 필요
 -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과정, 결산, 평가 과정에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참여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주민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참여의 효능감을 증대할 수 있음
- 광역도에 해당하는 사업이 제안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
 - 기존의 권역별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경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교육 및 주민참여예산 정보제공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 예산학교를 참여예산사업 발굴, 참여예산제 홍보, 주민참여 범위 확대 등에 활용할 필요
 - 예산학교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참여예산, 모의 제안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안사업을 발굴 가능
 - 이수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안사업에 대한 투표 대상, 사업 모니터링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
- 주민제안사업 제도의 정교성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많은 운영경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 필요
 - 주민제안사업은 사업부서의 심사 및 사업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심사,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운영경비를 유발할 수 있음
 - 주민제안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1) 운영개요

- 2019년 기준 20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제안사업 공모 형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제안사업은 읍·면·동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한정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2019년 사업예산 규모 : 200억원
 - 도 전체 200억원

	제주시 120억원
	서귀포시 80억원
- 배정방법 : 기본배정사업 55억원, 발굴우수사업 145억원
- ①읍면동 기본배정 사업(읍·면 2억원, 동 1억원) : 55억원
 - 제주시(33억) : 7개 읍·면(14억), 19개 동 (19억)
 - 서귀포시(22억) : 5개 읍·면(10억), 12개 동 (12억)
- ②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읍·면·동별 제안사업) 지원 : 145억원
 - 제주시 87억원, 서귀포시 58억원
- 읍·면·동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한정.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노인대학 비품구입 등 행정·지도 본청 업무인 사업 등은 제외

3) 주민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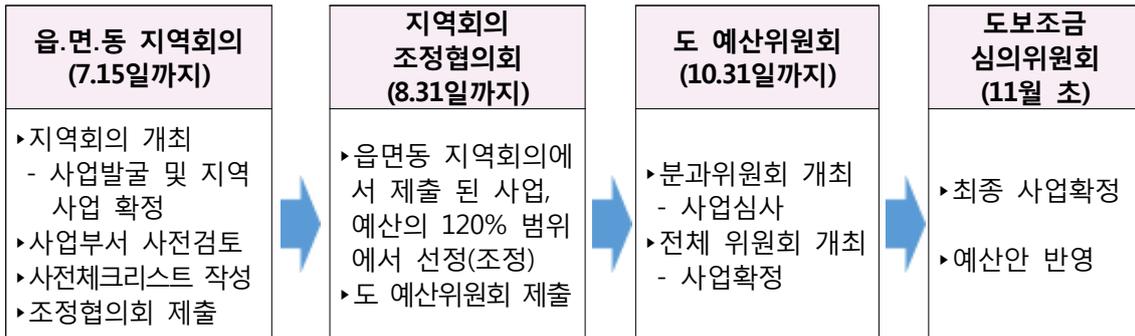
(1) 주민제안사업 공모

■ 1단계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읍·면·동)

-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주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내 “사업제안창구” 운영
- 발굴된 사업에 대해 사전검증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이 주관하여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 지역회의 발굴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 검토. 검토결과는 해당 지역회의에 송부됨
- 지역회의에서 사업선정
 - 소관부서 검토의견 반영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선 선정

- 읍면동별 기본 배정사업비(읍면 2억원, 동 1억원)와 지역회의 발굴 우수 제안사업을 각각 구분 선정하여 제출
-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 사업제출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선정 절차



■ 2단계 : 지역회의 조정협의회(행정시)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심사한 후, 배정 예산액의 120% 이내로 사업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

■ 3단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사업 결정
- 심사방법
 - 분과위별 사업 분류 및 주민참여 예산액 배분
 - 분과위원회별 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사전심사
 - 분과위원회 개최 및 심사

(2)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후평가 실시

- 기간 : 2018년 4월 ~ 7월
- 대상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전체 사업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내용 :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 성과, 현장 방문확인 등
- 활용 :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3) 주민참여예산 교육 실시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목표 :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주관 : 행정시(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기간 : 2018. 6월 ~ 8월
- 대상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참여희망주민,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 등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교육

- 목표 :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소개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 환기
- 주관 : 행정시(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기간 : 2018년 연중
- 대상 : 일반주민 위주 교육 실시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지역의제 발굴 방법 등

4) 주민참여 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구성인원 : 80명 이내
 - 당연직 15명(도 실국장, 행정시 부시장), 위촉직 65명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20명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 43명
 -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명

- 주요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지역회의

- 구성기관 : 읍·면·동(43개)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구성주체 : 읍면동장
- 구성인원 : 60명 이내(인원조정은 읍면동 자율적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리·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주요기능
 -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 구성기관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구성주체 : 행정시장
- 구성인원 : 50명 이내(총 100명)
 - 당연직 :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
 - 위촉직 : 지역회의의 위원장,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주요기능
 -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 임기 : 2년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당연직 : 예산담당관 및 행정시의 예산담당과장
 - 위촉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
 -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대표 등
- 구성현황(15명) : 도의원 1, 전문가 6, 시민단체 3, 예산위원 2, 공무원 3
- 역 할
 -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개발 및 교육, 조례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 행정조직 및 인력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업무를 1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음. 그마저 타 업무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담 인력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 아래 예산지원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5) 주요 특징

- 지역회의가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함
 -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집함에 따라 수집된 의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읍·면·동 소관의 사업예산에 한정되어 도 수준의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못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이 없음

-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또한 없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공모사업 선정에 한정됨
- 조정협의회를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음. 그러나 행정시장이 조정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함에 따라 주민참여의 원리에 위배됨
-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평가를 주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보임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1) 운영개요

-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개편
-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도정 주요 정책까지 확대
- 주민 공모사업의 규모를 증액 및 세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기능 강화(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30억원 이상 자체사업,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 그리고 별도 공모사업에 배정된 500억원의 자체사업에 한정
- 공모사업 중 지역지원형 사업은 경기도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업이 포함

[표 1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구분		사업내용	참여방법
비공모사업		-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 - 道 정책사업 중 30억원 이상 자체사업	단위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공모사업	불특정 공모사업	도정참여형 (200억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자체직접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기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주민제안 + 시군위원회 추천 (접수된 사업 중)
		道-시군 연계협력형 (150억원) - 道와 시군이 연계 추진 사업(자체지원사업) -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적용되는 사업 - 시·군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 중 도-시군 연계사업	주민제안 + 시군위원회 추천 (접수된 사업 중)
	특정 공모사업	지역지원형 (150억원) - 지역사회 발전 및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실·국이 제안한 사업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도민이 확대·변경 을 필요로 하는 사업	집행부 +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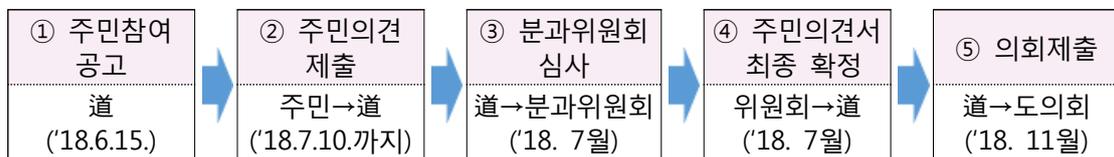
자료: 경기도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3) 주민참여 방법

■ 도정 주요 자체사업과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경기도의 주요 자체사업과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사를 통해 도에 제출
 - 추진방향, 적정성, 효율성 증대 방안, 개선사항 등 의견 제시
 - 주민의견은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또한 우편을 통해 접수

[그림 9] 경기도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자료: 경기도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 접수된 의견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주민의견서로 작성됨
-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주민의견서를 확정
- 확정된 의견은 도에 제출되어 실국의 예산편성에 반영

■ 주민제안사업

- 도정참여형, 도-시군연계협력형, 지역지원형 사업에 대한 주민공모
- 주민의견은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또한 우편을 통해 접수하되,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 접수된 제안사업은 도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에서 검토 및 사업구체화
 - 사업부서는 제안된 사업 중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추진 가능 여부 검토
 - 시군 사무인 경우 道에서 심사하지 않고 시군위원회로 송부
 - 추진 가능 사업에 대하여 道 사업담당자와 제안자가 협업하여 제안사업 구체화 및 수정·보완. 道-시군 연계협력형 사업은 시군 담당자 포함 협업
 - 예산담당관은 구체화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 분과위원회는 작성된 사업안에 대한 심사
 - 제안자가 제안사업 발표 후 질의답변, 관련실국은 의견 제출
 - 시군위원회에서 추천한 道-시군 연계협력형 사업은 시군위원회의 의견개진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실행력 확보
- 제안사업 최종 확정 및 제출(위원회 → 道)
 -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제안사업을 총회에 상정
 - 총회 토론을 거쳐 제안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道로 제출
- 예산편성(道 사업담당자 및 예산담당관)
 - 채택된 제안사업에 대하여는 道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실에서 2019년 예산안에 반영, 의회 예산심의 적극 대응(사업명에 주민참여예산 병기)

[그림 10] 경기도 주민제안사업 예산편성 절차



■ 설문조사

- 2019년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투자 부문에 대한 선호도, 사업 우선순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 수렴 등
 - 설문조사 항목 선정 및 주민 의견수렴 공고(~5.20)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종합토론 및 설문결과 제출
 - 道는 실국 재원배분액 결정에 설문결과 적극 반영

■ 공청회

- 2019년 예산 편성 방향 및 재원 배분 계획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집행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위원으로 위촉
- 기능
 -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편성→집행→평가·환류 등 재정과정 감시기능 수행
 -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건에 대하여 조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등 예산 집행 감시

■ 사업평가 및 환류 등에 대한 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전년도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시켜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50억원 이상 자체사업 서면평가결과 반영(道 50%, 전문가 30%, 위원회 20%)
 - 행사·축제성 사업 현장평가결과반영(道 50%, 전문가 30%, 위원회 20%)

4) 주민참여 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00명 내외로 구성. 당연직 9명, 위촉직 91명임

[표 1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회	비고
합계	100명	*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으로 위촉(희망자에 한함)
당연직 (9명)	9명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정책기획관,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추천	도의회	5명 · 관련분야 경력자, 전공자, 기관 및 단체 소속으로 참여예산에 관심이 높은 자 * 기업인, 경제학자,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시군추천	31명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기타 전문가 *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 청년 등) 우선 추천
	실국추천 (직능단체)	15명 · 분야별 전문가 추천(직능단체와 협의) *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 청년 등) 우선 추천
공개 모집	공개모집	25명 ·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기존위원	15명 · 2년간 출석률이 50% 이상(전체회의/분과회의) 연임희망 신청자 (1회 연임가능)

자료: 경기도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 위촉직 중 51명은 추천방식으로, 40명은 공모방식으로 모집됨. 실국 및 직능 기관 추천, 시·군 1명 의무 추천, 주민 공개모집
- 선정협의회(7명 내외)에서 선정
-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위원의 50% 이상)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함. 4월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함
- 위원회는 총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특화되어 운영

[표 1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 운영

구분	총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100명	5개 분과 각 20명	2개 각 10명	13명
세부조직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건설도시, 여성평생교육	성인지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유발생시 구성	총회 3명, 분과별 2명(위원장, 부위원장)
주요역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한 최종결정	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민제안. 설문 등을 고려한 최종의견을 총회에 상정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대한 특위 의견서 작성하여 도에 제출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부 운영 방향. 계획 등의 협의결정 ②도-시군 교류/협력 방안 협의

자료: 경기도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 주요 기능
 - 주민 제안사업 심사·예산편성 사업 결정
 - 道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정 감시기능 강화
 - 전년도 도 재정사업 평가 위원으로 활동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5개 분야 12명으로 구성
 - 경기도의회 2, 재정전문가 4, 시민단체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 공무원 1
- 기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역기능 해소 방안,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그 밖에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등
- 운영
 - 자문·협의 기능에서 탈피해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 개발
 - 경기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
 - 2018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주민보고회(9월)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11월) 개최. 우수 시군 선정(행안부 재정분석 지표 적용),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통한 道-시군 정보 교류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행정조직 및 인력

-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예산담당관 아래에 주민참여예산 팀을 설치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업무를 전담하지는 않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
-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개, 주민참여기구,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
- 주민제안사업의 선정 과정을 공개하여 일반주민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그림 11]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



5) 주요 특징

- 한정된 범위의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심사하는 자체사업의 범위를 30억원 이상 사업과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으로 한정함. 2017년 기준으로 각각 46건과 35건으로 매우 적은 대상으로 설정됨
 -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의 질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81건의 자체사업은 지나치게 작은 규모로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도정 주요 자체사업과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실국 예산편성에 반영된다고 하지만,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광역도에 적합한 주민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사업을 유형화함
 - 도정참여형 사업의 내용을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과 ‘경기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으로 한정함
- 주민제안사업의 범위에 기존사업의 변경·확대까지 포함함
 - 주민제안사업에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의 변경·확대까지 포함됨
 -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서 제안자, 사업부서, 예산담당관이 협업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실효성과 주민참여의 질을 제고함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경기도 차원의 주민참여의 중개 역할 수행함
 - 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제안사업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 주민제안사업 중 도-시군 연계협력형 사업은 시·군 지방보조사업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주민제안사업 중 지역지원형 사업에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업이 포함되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음
 - 지역사회 발전 및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실·국이 제안한 사업이 지역지원형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경기도 집행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음
- 지역지원형 사업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제안사업과 중복될 수 있음
 - 지역지원형 사업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어 광역도 사무와 배치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
- 집행부, 의회, 시군과의 협력관계, 위원회의 전문성, 지역대표성,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60명이 당연직 또는 추천직으로 되어 있어 공모비율이 낮음
 - 그러나 당연직과 추천직은 집행부, 의회, 시군과의 협력관계,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실국의 국장, 도의회 추천인,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됨

- 또한 15명을 기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자율성 보장 및 역할 확대
 - 회의일정, 현장 방문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 道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안·행정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실효성 제고
 - 자문·협의 기능에서 탈피해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 개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주민보고회(9월), 평가·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11월) 추진
- 道-시군 주민참여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
 - 워크숍, 토론회, 벤치마킹 등을 통한 위원회 간 협력 및 활동 공유
 - 道-시군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시군 위원회 의견개진.
 - 시군 주민참여위원회는 접수된 공모사업 중 道에서 추진하거나 道-시군 합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道로 추천
 - 道-시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 및 결과 공유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시군 위원회 활동 지원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가 메인 플랫폼 역할 수행
 - 시군 추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또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ONE-STOP)
 - 道-시군 위원 간 토론방·알림방 운영, 제도개선 사항 공유 지원

6) 시사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 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과정임. 그로 인해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실효성이 낮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한정하여 분과위원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검토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제안사업의 범위를 기존사업의 변경·확대로 확장
 - 주민제안사업의 범위를 신규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사업의 변경이나 확

대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주민제안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용
 - 지역주민이 사업제안을 할 경우,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구로 작동하는 체계가 형성됨
 - 이는 시·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 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서 제안자, 사업부서, 예산담당관이 협업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참여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집행부, 의회, 시군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 선정시 참여
 -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실국별 담당자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의회와 시군과의 협력을 위해 의회와 시군의 추천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1) 운영개요

- 주민제안사업 공모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다만,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시 전체예산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체 예산, 주요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과정 추가
- 참여예산위원,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예산 교육 실시
- 주민제안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일반 재정예산 편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감포럼 운영
-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교육, 모의 예산위원회 운영, 사업제안대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제도 운영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 구와 군에 대한 예산지원, 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구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하여 교육, 홍보, 참여예산 제도개선 의견제시 등 기능 부여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140억원

[그림 12]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사업 공모 유형

구분	공모 규모	사업 내용
시정참여형사업	90억원	대도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편성
지역참여형사업	40억원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사업	10억원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자료: 대구광역시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기본계획

- 시 전체예산
 - 2019년 시 전체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3) 주민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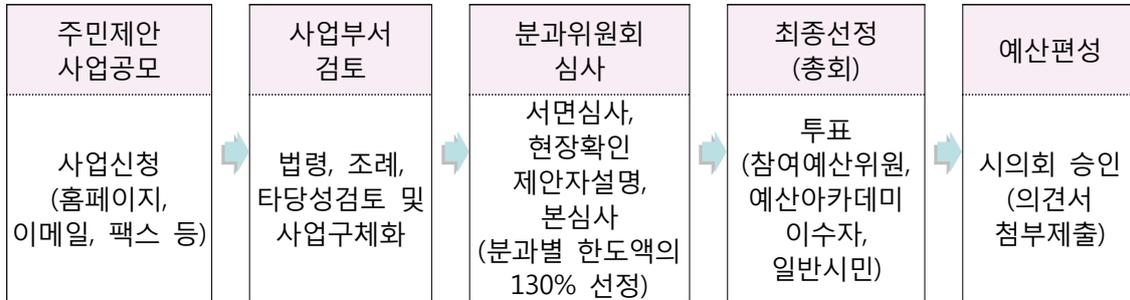
(1) 주민제안사업 공모

■ 시정참여형 사업

- 市소관 사무로 시정 주요분야에 대한 시비 투자 대상사업
- 사업규모는 90억원으로 일반사업은 3억원 이내로 편성되고, 프로그램(행사성)사업은 50백만원 이내로 편성됨
 - 제안사업이 심사과정에서 통과될 경우 일반사업은 5억원, 프로그램·행사사업은 1억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남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심사

• 운영 절차

[그림 13] 대구광역시 시정참여형 사업 예산편성 절차



자료: 대구광역시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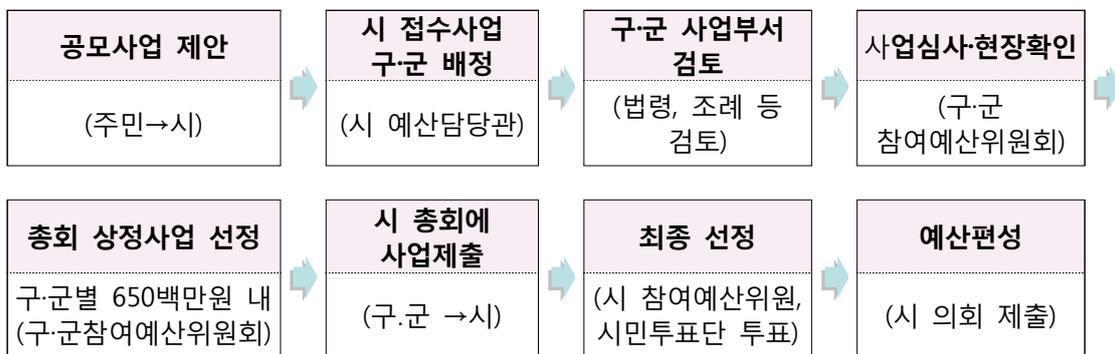
- 인터넷(대구광역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사업 제안
- 접수된 제안에 대해 사업부서는 타당성검토와 사업구체화 작업 수행.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구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또한 대구시 전역 시민편의 향상 위한 광역사업으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 사업부서 검토 후 분과위원회 심사 실시. 분과위원회는 서면심사, 현장 확인, 본심사 과정을 거침. 본심사 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 제안자, 사업부서가 충분한 숙의·토론을 거침. 분과위원 심사에서 분과별 한도액의 130% 범위 내 사업이 선정되어 총회에 상정됨
- 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사업으로 선정됨. 투표는 참여예산위원 총회투표 50%, 예산아카데미 이수자투표 10%, 일반시민투표 40%로 배분되어 실시되고, 합산된 투표결과에서 고득점 사업 순으로 결정됨. 예산아카데미 이수자와 일반시민은 총회 현장 참석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재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모바일로 투표 가능함

■ 지역참여형 사업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구·군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규모는 40억원으로 구·군별로 5억원 범위내 총액 통합관리
 - 일반사업은 50백만원 이내로 편성되고, 프로그램(행사성)사업은 20백만원 이내로 편성됨
 - 제안사업이 심사과정에서 통폐합될 경우 일반사업은 1억원, 프로그램·행사

- 사업은 40백만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남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심사
 -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선정 자율권 부여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견인
- 운영 절차

[그림 14] 대구광역시 지역참여형사업 예산편성 절차



자료: 대구광역시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

- 대구시민, 직장인 학생 등은 인터넷(대구광역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사업 제안
- 접수된 제안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구·군별로 배분
- 구·군의 사업부서는 타당성검토와 사업구체화 작업 수행.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구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부서 검토 후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면심사, 현장 확인, 본심사 과정을 거침. 본심사 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 제안자, 사업부서가 충분한 숙의·토론을 거침. 심사에서 구·군별 한도액(5억원)의 130% 범위 내 사업이 선정되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상정됨
- 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사업으로 선정됨. 투표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총회투표 60%, 시민투표단 40%로 배분되어 실시되고, 합산된 투표결과에서 고득점 사업 순으로 결정됨. 시민투표단은 구·군 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됨

■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 구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 40개 지역회의에 총사업비 10억원 지원. 지역회의별 25백만원 이내
 - 구군별 6개 이내 지역회의 선정하고 운영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역회의별 선정사업 수는 제한 없음, 건당 사업비는 최소 300만원 이상
- 지역회의 위원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아닌 일반주민 50% 이상이 되도록 함
- 사업 추진 절차
 - ①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신청(동⇄구·군⇄시) : ' 18. 2~3월
 - ②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기관 심사 선정 : ' 18. 4월
 - ③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최소 회의 3회 이상 개최) : ' 18. 4월 ~ 8월
 - ④ (읍·면)동 사업 행정검토 (구·군 사업부서) : ' 18. 7월
 - ⑤ 최종사업 선정하여 市에 제출 (동⇄구·군⇄시) : ' 18. 8.10 기한
 - ⑥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 승인(市주민참여예산 총회) : ' 18. 8~9월
 - ⑦ 시 예산안 편성(市시민소통과) 및 시의회 제출 : ' 18. 9~10월

■ 시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 차년도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해 보고받고, 전체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 참여 방법
 - 시민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총 7개분과 50명
 - 운영기간 : 5월 ~ 10월
- 주요내용
 - 2019년 시 전체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 의견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및 실무 작성회의 개최
 -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주민참여예산 공감포럼

-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우수 주민제안사업을 사업화하여 일반

재정예산으로 편성하는 확대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대상사업 : 주민제안사업 중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
 - 단일사업 : 사업비 3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기간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 통폐합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
 - 사업범위를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 운영방식 : 1차 실무회의와 2차 공감포럼 회의 운영
 - ① 실무회의 : 소관 사업부서 공무원
 - 내용 : 분과위원회 추천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의견 설명
 - 유사 중복사업, 법령 및 조례 저촉여부 등 검토, 사업구체화하여 계획 수립
 - ② 공감포럼 : 15명 정도(전문가 5, 참여예산위원 7명, 공무원 3명)
 - 내용 : 제안자의 제안취지,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검토의견 청취 후
 - 참여자 토론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결정

■ 예산아카데미 운영

- 교육 상설화, 수요자별 교육 다양화,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참여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 제고
- 교육 과정
 - ① 2018년 예산아카데미 기본과정(6시간) : 참여예산제 개요, 제도설명, 대구시 예산, 참여방법 등
 - ② 시민 상설교육 : 예산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과 사례학습을 통한 예산교육
 - ③ 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 제안사업 심사기법, 모니터링 실무, 전체예산 분석방법, 위원 소통 워크숍 등
 - ④ 참여예산 컨설팅단 교육 : 읍·면·동 지역회의 컨설팅단, 전체예산 시민의견 제시 지원 자문단 등 대상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컨설팅 활동 방법론 등 교육
 - ⑤ 대구시 예산분석 교육 : 대구시 주요사업 분석실습, 주민의견서 작성·보완을 위한 교육·토론
 - ⑥ 찾아가는 예산학교 : 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사업제안 등 시민참여 방법 등 설명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가치 학습 기회 제공
- 사업대상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사업비는 13백만원
- 사업내용 : 예산교육, 모의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사업 제안대회 개최
 - 참여예산 제안대회에서 제안사업 발표 및 우수사업 시상. 우수 제안사업은 대구시 사업부서 검토 후 2019년 예산안에 편성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 실효성 확보 위해 집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우수 사업 선정 방향성 제시
- 모니터링단 운영 : 40명(분과위원회별 모니터링 소위원회 운영)
 - 상·하반기 2회(5월 : 서면실시, 11월 : 서면+현장확인)
- 모니터링 결과는 서면심사와 현장확인 자료를 종합하여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부적정 의견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토론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등 참여주체들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 구·군과 유기적인 협력 통한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합동 토론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의 발표 및 참관 유도
- 토론회 주요내용 :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대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제 및 패널토론
 - 구·군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향 발표
 - 세부 주제별 분임토론 및 발표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

■ 주민참여예산 총회

- 다양한 행사 진행과 함께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축제의 장으로 운영
- 참석자는 시 및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학생, 시 및 구·군 공무원 등으로 약 500명
-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 일정을 고려하여 8월 말에 진행하되, 다양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2일간으로 진행
- 주요행사 : 사업결정, 현장투표, 경진대회, 교류시간, 세미나, 홍보 등
 - 사업결정 : 시정참여형사업, 지역참여형사업, 지역회의사업에 대해 현장투표 또는 보고를 거쳐 최종 결정
 - 경진대회 : 읍·면 지역회의 우수사업과 참여예산우수실행사업경진대회등
 - 교류시간 : 시·구·군 참여예산위원, 시장, 시의회 등과 소통의 장 마련
- 사업 홍보부스 설치
 - 분과위원회별로 시정참여형사업 홍보부스 운영하여 사업설명
 - 구·군별로 지역참여형사업과 읍·면·동 지역회의사업 홍보부스 운영

■ 구·군 참여예산제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구·군의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 위원회 구성, 예산교육, 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절차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투명성 확보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견인
- 평가시기 : 1~2월
- 평가단 구성 :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등 참여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 6억원(시책수요 특별조정교부금)

계	최우수(1개 기관)	우수(1개 기관)	장려(1개 기관)
6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4) 주민참여 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총 100명으로 구성되고, 공모로 74명, 추천으로 19명, 임명으로 7명이 임명됨
- 임기는 1년
- 내부조직은 크게 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일자리경제, 시민복지,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도시재창조, 건설교통, 안전행정의 7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 위원수는 사업 심사건수 비례하여 조정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 위원회가 부여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인원 구성 : 17명(총회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안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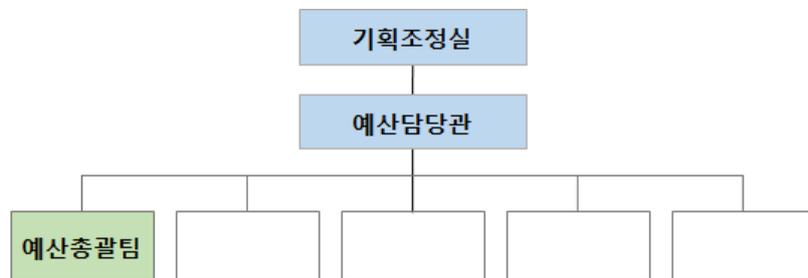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구하는 순수한 민관협의체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 20명 이내로 구성
 - 예산관련전문가 3인, 시민단체 3인, 전현직참여예산위원 10인, 시의원 1인, 공무원 3인 등
- 기능
 - 주민참여예산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예산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강사진 양성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 : 지역참여형사업 심사, 예산교육, 참여예산제도 운영 자문 등 지원

■ 주민참여예산 지원 행정조직 및 인력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소속 예산총괄팀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15]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지원 행정조직



- 담당 인력은 2018년 6월 현재 3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아카데미 운영 및 회원관리, 예산편성 설명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
-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개, 주민참여기구,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
- 주민제안사업의 선정 과정을 공개하여 일반주민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그림 16]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



5) 주요 특징

- 대구광역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를 벤치마킹하여 제도를 운영함.
서울시 제도의 주요 장점을 흡수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전체예산안, 예산집행, 결산 등으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를 추가함
 - 또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사업 현장확인 및 검토, 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결산내역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예산집행과 결산과정에 대한 참여방안을 마련함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예산분석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분석 방법 교육, 워크숍,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함
- 주민제안사업 선정시 투표방식을 개선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 주민제안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일반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성을 제고함
- 또한, 예산학교 이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산교육 참여의 효능감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제고를 도모함
- 주민제안사업의 품질 제고 노력
 -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거나 통폐합
-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 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부서는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구체화 작업을 실시하며, 분과위원회 심사시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함
 -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민관협치 모델 구현
 - 또한 이는 지역주민들이 제안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이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
- 지역참여형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모델 구현 및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도모함
- 읍면·동 지역회의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주도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지역회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임
 -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추진
 - 뿐만 아니라, 지역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함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원에 전현직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협의회, 위원회, 시의회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함
-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를 검토해야할 제안사업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구군 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 구군 참여예산제를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책수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함
 - 사업의 효과가 각 자치구에 한정되는 지역참여형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평가
- 주민참여 총회를 축제의 장으로 운영

- 총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간 소통을 높일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를 주민참여예산위원뿐만 아니라 구·군, 시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함께 평가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전담 행정조직과 인력을 구성함

6) 시사점

- 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제고
 -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예산학교 이수자 등을 참여시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과 참여효능감을 높일 필요
- 주민제안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관협치 필요
 -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임
- 지역참여형 사업공모·심사 운영
 - 지역참여형 사업은 광역적 사무가 아닐 수 있지만, 구·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광역도가 구·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지역회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초생활단위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읍·면·동 지역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시, 합동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주제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대구광역시는 구·군, 시민까지 참여시켜 합동 평가토론회 형식을 설계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와 함께 분임토론에서 세부주제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예산연구회 구성원에 전현직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의회의원을 포함

- 주민참여예산제의 기구간 협력과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예산연구회에 위원회, 의회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방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를 주민참여예산위원뿐만 아니라 구·군,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함께 평가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필요
 -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과정에 다양한 구성원을 동참시킴으로써 내부적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음

5. 국민참여예산제

■ 개요

-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 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 과정을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국민참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관심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 예상

■ 운영방법

-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
-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과 참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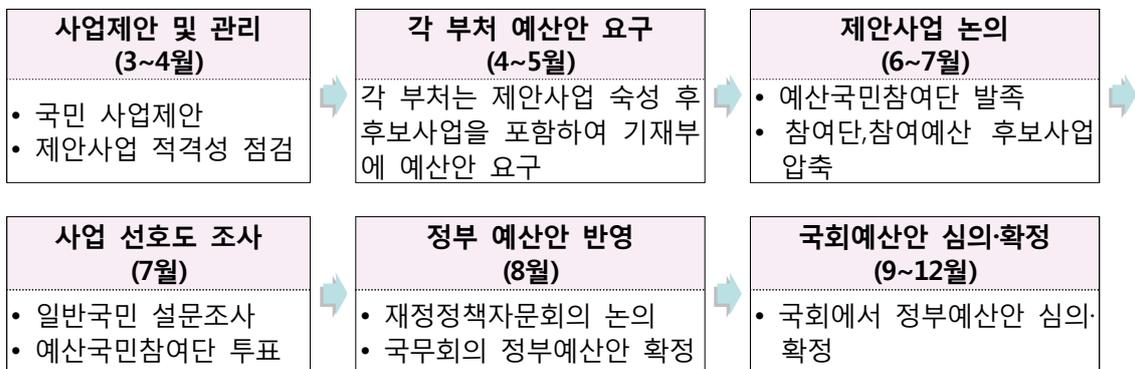
■ 진행절차

- 사업제안은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우

편과 같은 오프라인 제안도 가능함

- 제안 대상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12대 분야)의 사업
 - 사업 효과가 전국에 귀속되는 사업이면서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 제안된 사업은 각 부처에서 적격성을 점검한 후 숙성작업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함
 - 숙성 작업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루어짐
-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에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함
 - 예산국민참여단은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로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구성됨
 - 참여단은 각 부처가 요구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논의하여 압축
- 압축된 후보사업에 대해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참여단 투표 실시함
- 선정된 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포함됨

[그림 17] 국민참여예산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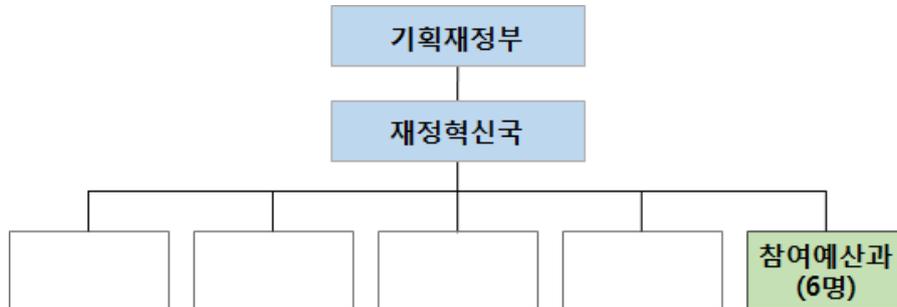


자료: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조직, 인력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재정혁신국 아래 참여예산과를 신설하여 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함

[그림 18] 국민참여예산 운영조직 및 인력



■ 주요 특징

- 제안된 국민의견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성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선정의 민주성을 확보함
- 국민참여예산제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마련함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종합

1. 운영사례 특징 종합

1)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제안사업 위주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최근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 행정에서 나타는 형태는 크게 ① 법률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②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는 절차로 구분됨(서정섭 외, 2017: 84)
 - 첫째, 의회 제출 전 단계에서 예산(안)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반영(서정섭 외, 2017: 84)
 - 둘째, 주민제안(공모),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발굴(서정섭 외, 2017: 84)
- 4개 사례의 광역자치단체는 주민제안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700억원의 규모 내에서 5가지 유형의 주민제안사업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억원 규모 내에서 주민제안사업 운영
 - 경기도는 500억원 규모 내에서 3가지 유형의 주민제안사업 운영
 - 대구광역시는 140억원 규모 내에서 3가지 유형의 주민제안사업 운영
 - 네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민제안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전체예산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강화함

■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실효적인 주민참여 방안

-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 경기도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산안 검토 및 의견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심사하는 자체사업의 범위를 30억원 이상 사업과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으로 한정함. 2017년 기준으로 각각 46건과 35건으로 매우 적은 대상으로 설정됨

■ 주민참여 범위의 확대

- 주민참여의 범위는 2018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법률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그럼에도 선도적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이외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함
 - 서울특별시는 참여예산사업의 집행과정 모니터링과 사업평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편성 이외의 과정에까지 확대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예산집행, 결산 등으로 확대함
- 예산편성에서도 단순 신규사업 제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사업의 변경·확대로 참여범위를 확장함
 - 경기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범위 확대 사례가 나타남. 즉, 주민제안사업의 범위에 기존사업의 변경·확대까지 포함함

2)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 주민제안사업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 사용

- 사례 자치단체들이 사용하는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제안사업 공모,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투자 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임
- 이러한 방법 중 모든 사례의 자치단체는 일정 예산 한도 내에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는 방법을 중심적인 주민참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전문성, 시간제약 등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참여하는 주민의 효능감 또한 높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음

■ 광역단위 자치단체 적합한 사업제안 유도

- 광역단위 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사업을 유형화하여 범위를 한정함
 - 서울특별시는 주민제안사업을 시정분야와 지역분야로 구분한 후, 시정분야 사업의 조건을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의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으로 설정함
 - 경기도는 주민제안사업 중 ‘도정참여형 사업’으로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경기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설정함
 - 대구광역시는 주민제안사업 중 시정참여형 사업을 설정하여 시 소관 사무로 제안사업을 한정함
 - 국민참여예산 또한 제안사업의 대상을 사업효과가 전국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한정함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민관협치 및 숙의

-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관협치와 숙의과정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민주성 등의 가치를 구현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효능감과 만족도 또한 제고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서 민관협의회 심사와 사업내용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함
 - 경기도는 주민제안사업 선정과정에서 제안자, 사업부서, 예산담당관이 협업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참여의 질을 제고함
 - 대구광역시는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함
 - 국민참여예산에서도 각 부처에서 제안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하고, 이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숙성작업을 진행함

■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활용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IT기기를 활용하여 주민참여조직 구성원 이외의 일반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참여방식을 활용하여 참여주민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예산학교를 활용하여 주민참여의 계층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청년·여성·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함. 즉, 기존의 권역별 교육에서 부문·계층별 교육으로 확대 추진
 - 또한 교육이수자들로 형성된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참여예산제 홍보, 참여예산사업 발굴, 예산낭비 우려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 많은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주민들의 제안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

3) 주민참여예산 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원기구 중심의 기구 운영

- 사례 자치단체들의 주민참여예산 기구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원기구로 구성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다시 세분되어 운영됨

■ 충분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수 확보와 위원의 대표성 제고

- 사례 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는 300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80명, 경기도는 100명,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100명임
-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70% 이상을 공모나 추천으로 충원함

4)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 전담 조직과 인력 구성

-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전담 행정조직과 인력을 구성함
 - 국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또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함
-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인력 구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한 기제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선도적인 자치단체들은 자체평가시스템을 마련함
 -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과제 발굴과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함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을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함께 평가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함

■ 예산서의 주민참여예산 표기

-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된 경우,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 표기를 하여 일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시민참여” 라고 표기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임을 확인시킴

-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

-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교류를 통해 시군의 의견이 광역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는 워크숍, 토론회, 벤치마킹 등을 통한 위원회 간 협력 및 활동 공유
 - 이를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을 사무구분에 따라 도와 시·군에 배분
 - 또한,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간 연구활동 및 결과를 공유함

■ 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메인 플랫폼화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메인 플랫폼화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함
 -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시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함. 즉,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가 메인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함
 - 시군 추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또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함(ONE-STOP)
 - 도-시군 위원 간 토론방·알림방 운영, 제도개선 사항 공유 지원

■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시·군·자치구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평가를 통해 자치구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차등배분함. 이를 통해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유도함
 - 대구광역시는 구·군 참여예산제를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책수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함
-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회의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찾아가는 예산교육을 운영하거나 합동 워크숍 및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

2. 시사점 종합

1) 주민참여예산 범위

■ 집행부 예산안 검토시 범위 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 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안 검토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과정임. 그로 인해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실효성이 낮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한정하여 분과위원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검토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

-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편성 단계에 국한된 주민참여의 범위를 집행 및 결산 단계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과정, 결산, 평가 과정에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참여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민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참여의 효능감을 증대할 수 있음
- 주민제안사업의 범위를 기존사업의 변경·확대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제안사업의 범위를 신규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사업의 변경이나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함

2)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 주민제안사업을 활용한 주민참여 수준의 제고

- 주민제안사업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높이고자 한 것임
- 따라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주민제안사업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관심을 보통 한정된 규모로 운영되는 주민제안사업에 집중시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
- 주민제안사업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민참여조직이 주도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효능감이 높기 때문임
- 그에 반해,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참여는 실제 행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남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수립시 주민제안사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주민제안사업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제안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즉시 사업계획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제안서를 구체화하며 체계화하여 제안사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사업담당 공무원이나 컨설턴트가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주민참여

- 광역도는 넓은 지역과 다양한 계층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일반 주민의 예산참여가 어려움
-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물리적

이동 없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과 구체적인 참여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3) 주민참여예산 기구

■ 충분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수 확보와 위원의 대표성 제고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충청남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는 40명에 불과하여 제도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과 주민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부분을 공모나 추천으로 충원해야 함

4)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 예산학교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예산학교를 참여예산사업 발굴, 참여예산제 홍보, 주민참여 범위 확대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예산학교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참여예산, 모의 제안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안사업을 발굴 가능
 - 이수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안사업에 대한 투표대상, 사업 모니터링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
- 광역도에 해당하는 사업이 제안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
 - 기존의 권역별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경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교육 및 주민참여예산 정보제공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간 교류 활성화

- 도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이 사업제안을 할 경우,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구로 작동하는 체계가 형성됨
- 도-시군 간 교류 확대는 시·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구성

- 주민참여방법이 다양화되고, 주민참여의 절차가 정교화됨에 따라 제도운영 업무가 과다해지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완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영모델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시, 합동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주제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합동 평가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간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와 함께 분임토론에서 세부주제를 설정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 기초자치단체 중 특히 농촌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사회적 환경 등의

영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음

- 이러한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광역도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공모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나 개선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관할행정구역 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박람회 개최하여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관리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주민참여방법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각 참여방법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제도의 목적 달성에 유리할 수 있으나, 제도운영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주민제안사업은 사업부서의 심사 및 사업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심사,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운영경비를 유발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평가, 사업평가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 필요

제5장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제1절 기본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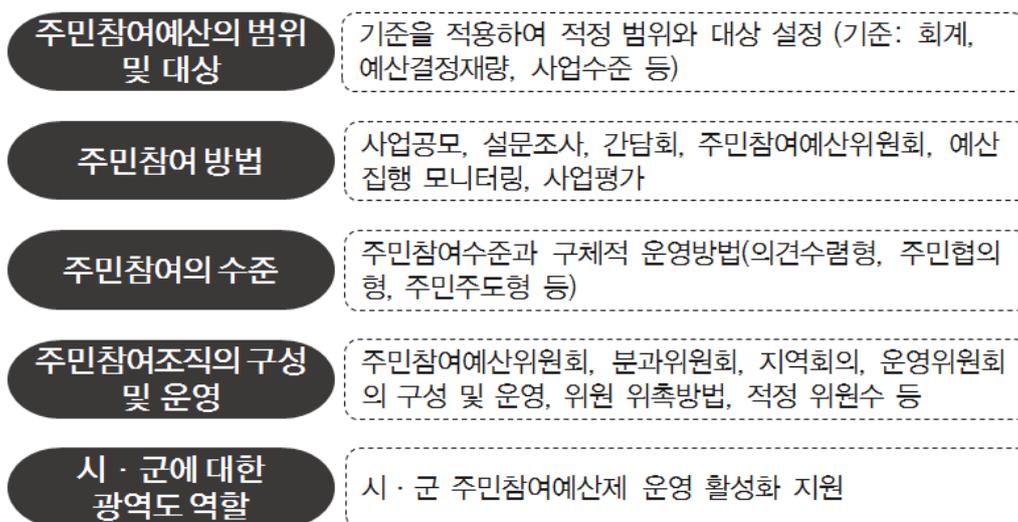
제2절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

제1절 기본 전제

1.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구성요소

- 앞의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기구 등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됨
 - 광채기(2011)는 주민참여 수준, 예산편성권의 공유수준, 주민참여과정의 주도자, 주민참여권의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참여범위와 대상, 의사소통방식, 주민참여방식을 구성요소로 하여 운영모델을 유형화하였음
- 운영모델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참여방법, 참여수준, 참여기구 등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군에 대한 역할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주요 요소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광역도 운영모델을 설계하고자 함

[그림 19]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의 구성요소



2. 모델 설계의 주안점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광역도의 특성을 고려
- 광역도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에 맞춰 주민참여예산 운영모델 구상
- 기존의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델 설계

1) 광역도의 물리적 특성

- 광역도는 시·군에 비해 물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다양한 계층에서 거주하는 특성을 지님
- 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접근성, 주민의견의 대표성 확보 등이 제도운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도의 관할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도 행정에 접근하기 쉽지 않음. 특히, 도청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지역주민의 도정참여는 어려워짐
 -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을 참여시켜 접수되는 주민의견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
- 따라서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수렴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2) 광역도 사무에 적합한 주민의견 수렴

■ 광역도와 시·군의 사무 구분

-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라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라는 광역자치단체의 2개의 계층으로 구분됨
 - 특별시와 광역시는 여러 자치구로 구성되고, 광역도는 여러 시·군으로 구성됨
- 시·군과 광역도 사이의 사무구분은 비경합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짐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은 비경합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음. 즉,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도와 시·군 사이의 사무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광역도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

- 사무구분 기준에 따르면, 광역도 행정서비스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와 달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구성됨
- 사무구분 원리에 의하면 광역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군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닌 정책 수준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함
 - 지역의 민원성 제안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처리하고,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도 전체나 복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 다만,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일정 기한을 두고 실시한 후 중단 하여야 함
 - 또한 특정 지역에 효과가 국한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 간 지역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 담합 등이 발생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전체 지역주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음

- 광역도 예산사업은 주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떨어져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낮다는 문제가 나타남
-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수립에서 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광역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 중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

- 광역도는 방대한 사업을 체계화된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주민제안사업으로 한정되거나 주민참여가 형식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서정섭 외(2017)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 사업을 구분함

[표 15]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 분류

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 설정하여 주민 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링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결정(자치단체는 사업의 위법성 판단, 컨설팅 등 보조적 역할만 수행) -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 설정하지 않고 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 우선순위 등 의견을 제시하나, 실질적 우선순위 결정권한은 자치단체가 가짐 - 이상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일정한 기준을 사전 설정 - 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세부사업별) -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자료 : 서정섭 외(2017). p. 86.

- 따라서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는 공모사업과 주민제안사업 외에 일반 참여예산사업까지 포함하여야 함
-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사업의 효과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편성 단계 이후의 예산집행 단계와 사업평가 단계로 확대되어야 함

4) 광역도의 시·군 지원 역할

■ 시·군에 대한 광역도 역할의 근거

- 광역도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시·군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광역도는 도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일정한 예산 지원을 매개로 주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작동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시·군이 자신들의 고유한 사업 영역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 경우, 광역도는 지원할 수 있음
 - 이 때, 어떤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지에 대한 결정권은 시·군에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만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시·군에 대한 광역도 역할

- 광역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는 다수의 시·군을 내포하고 있음
- 광역도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거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제도이므로 광역도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시·군에 대해 정기적인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높은 지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낮은 지역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우수 운영모델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

1. 운영모델(안) 요약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표 16]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

요소	주요 내용	적용 기준
주민참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의 재량예산 중심의 범위 한정 ■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범위 한정 ■ 예산편성 이외의 집행, 평가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효과성 제고 • 참여범위 확대
주민참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한 사업도출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한 사업 제안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집행부 사업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 및 의견제시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효과성 제고 • 참여경로의 다양화 • 주민 대표성 확보
주민참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 주민협의, 의견제시 등의 혼합형 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에 대한 민주성 확보 •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 보호
주민참여조직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추천식 위주 위원 선정 ■ 참여예산위원의 적정 수 확보 ■ 적정 수의 분과위원회 개설 ■ 지역회의 운영 ■ 운영위원회의 주도적 역할 ■ 전달·심사 중심의 참여예산위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자율성 제고 • 주민에 대한 대표성 확보 • 참여의 효과성 제고
시·군에 대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간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 활성화 ■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단체 인센티브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와 시·군의 상생

- 운영모델(안)의 세부 내용은 이하에서 제시하였고, 시·군에 대한 광역도 역할은 별도의 장을 통해 제시함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대한 의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46조 제3항은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
-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체 예산을 대상하여야 함
- 그러나 실무적으로 전체 예산을 주민참여의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인원, 시간,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체 예산을 주민참여의 범위로 설정할 경우 기존에 나타나고 있는 주민참여의 형식화, 참여의 낮은 실효성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주민참여의 실효성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탐색해야 함(이상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
 - 전체 예산보다는 주민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점진적으로 재정운영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법적, 의무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수준을 조절하여 주민참여를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사업과 자체사업 중 자율편성사업을 주민참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예산은 회계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고, 일반회계는 성질에 따라 국고지원사업, 지정재원사업, 법적 경비, 의무적경비, 자체사업 등으로 구분됨
 - 자체사업은 다시 자율편성사업, 민간보조사업, 대규모사업으로 구분됨

- 2018년 자율편성사업 규모는 2,270억원임
-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반영은 실국별 토론회를 통해 신규사업 제안과 구조조정 의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다만, 실국별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건수의 과다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예산 건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자율편성예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참여예산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참여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참여방법과 참여수준에 따라 참여범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정재원사업, 법적경비, 의무적 경비, 민간이전경비, 대규모·한도의 경비, 특별회계, 기금을 주민참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율편성사업과 국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항목도 주민참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단기적으로 국고지원사업과 자율편성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설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항목의 성격이 다르므로, 주민참여의 수준을 달리하여 주민참여의 의의와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적절함
 - 국고지원사업과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수준은 주민협의형이나 민관협치형 또는 주민주도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반면, 지정재원사업, 법적경비, 의무적 경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민간이전경비는 지방보조사업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대규모·한도의 경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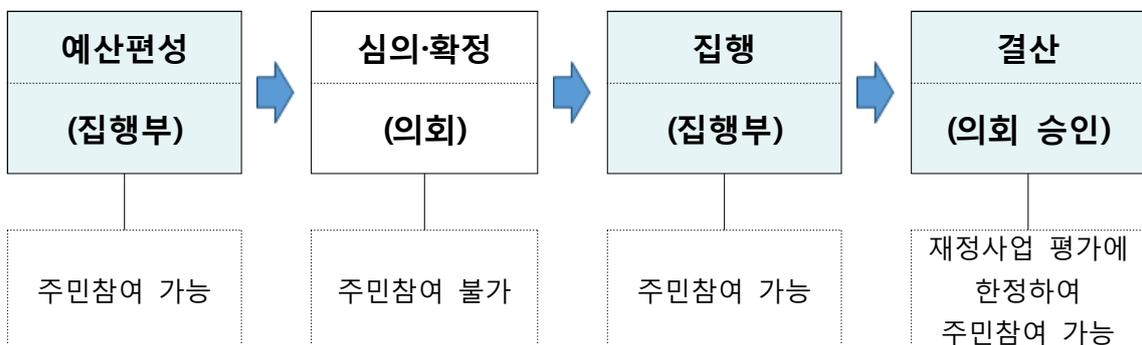
-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정리하면,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단기적으로는 주민참여의 실행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예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사업예산과 자율편성예산으로 한정함
 - 자율편성예산 전체의 운용방향 설정, 정책분야·부문 간 자원배분 방향, 정책분야·부문별 운용방향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나 협의 수준의 참여를 설정
 - 개별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제안, 사업검토 및 의견제시,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 등의 주민참여가 가능하고, 참여수준은 주민과의 협의나 민관협치 수준으로 설정함
- 점진적으로, 지정재원사업,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민간이전경비, 대규모·한도외경비, 특별회계, 기금 또한 주민참여의 대상으로 확대하되, 다만 주민참여수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임

[표 17]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구 분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유형	
1. 일반 회계	① 국고지원사업	사업제안,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사업 간 우선순위 선정 등		의견수렴 또는 주민협의	
	② 지정재원사업	점진적 참여 확대 대상		의견수렴	
	③ 법적경비	점진적 참여 확대 대상		의견수렴	
	④ 의무적 경비	점진적 참여 확대 대상		의견수렴	
	⑤ 자체 사업	자율 편성 사업	전체 예산	예산안의 방향 설정, 분야·부문 간 자원배분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분야·부문별 정책 방향 등	의견수렴 또는 주민협의
			개별 사업예산	사업제안,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사업 간 우선순위 선정 등	주민협의 또는 민관협치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협의
	대규모·한도외	점진적 참여 확대 대상		중기재정계획 또는 투자심사 참여	
2. 특별회계		점진적 참여 확대 대상		별도 참여방안 마련	
3. 기금		점진적 참여 확대 대상		별도 참여방안 마련	

- 예산과정상 주민참여의 범위는 예산편성 과정 이외에 집행과정과 사업평가과정까지 확대할 수 있음
 - 2018년 3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고,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를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의 권한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 있으므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임
 - 그러나 결산과정에서 재정사업의 평가와 결산작업은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의회에서 그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므로 재정사업 평가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가능함
 - 경기도는 재정사업 평가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참여시키고 있음

[그림 20] 예산과정상 주민참여의 범위



- 예산편성 이외에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와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참여는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주민참여는 실질적으로 참여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참여예산제 담당부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 도입을 통해 안정화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선행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평가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는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함
- 주민참여 범위의 확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충청남도의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도간 기능 조정이나 대상 조정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기존 제도 중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기능상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함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도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사업제안 이므로 상호 차별적으로 운영됨
-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실시되는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에 주민의견 제시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정책방향의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는 중복될 소지가 있음
- 이는 실국이나 예산부서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평가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정책 평가가 중복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중복 가능성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자문위원회가 다루는 대상의 수준을 다르게 함으로써 해결 가능함. 즉,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단위의 상위 수준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단위의 하위 수준에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3.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1) 기본방향

- 광역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효율적으로 수렴되는 구조
 - 지역 민원성 제안이 아닌, 정책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를 설계함
 - 주제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활용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일반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실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
 - 주민의견이 실국에 전달되어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과 숙의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은 민관협력과 숙의과정을 거친 개별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 제고함
-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개별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산과정에서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편성 이외에 집행과 결산으로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
 - 집행과정과 사업성과 평가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재정사업 평가과정으로 주민참여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전체 예산안 편성 및 자원배분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다만, 전체 예산안 편성 및 자원배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민의견 외에 외부적 환경변화, 전략적 판단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주민참여의 수준은 의견수렴형 또는 주민협의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실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
 -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활동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 예산건수를 한정
- 실국별 국고보조사업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표 18] 주민참여예산의 종류

구분		범위	참여방법
예산 한도액 비설정	주제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제안사업	- 광역도 사무에 해당하는 정책사업 - 전역 또는 복수의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간담회 참여
	편성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 광역도 주요 정책사업 - 광역도 신규 자체사업	단위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 광역도의 국고보조사업 (시·군 국고보조사업, 의무적사업 등 제외)	주요 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 방향	- 전체 예산안 편성 및 자원배분 방향 - 중점 투자분야	직접설문, 주민의견서 작성
예산 한도액 설정	도 소관 정책사업	- 광역도 사무에 해당하는 정책사업 - 전역 또는 복수의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주민제안 (접수된 사업 중)
	소규모 주민밀착사업	- 시·군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 광역도와 시·군이 연계 추진 사업(자체지원사업)	주민제안 + 시군위원회 추천 (접수된 사업 중)

2) 주제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한 참여예산 도출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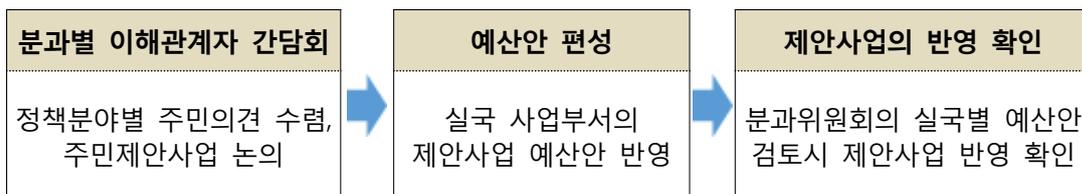
- 기본방향
 - 광역도 정책사업을 도출하는 모임에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제안사업을 기획하고 구체화시켜 집행부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방식
- 사업예산 규모
 - 주제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도 사무에 적합하고 단년도 추진이 가능하면 제한 없이 예산에 편성 가능하도록 함
- 대상사업
 - 도 사무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으로서, 도비로 수행되는 자체사업
 - 파급효과가 광역도 전역 또는 복수의 시·군에 미치는 사업
 - 도정주요분야 : 복지, 경제·일자리, 여성, 교통, 문화관광, 환경, 안전, 주택 등

- 시·군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도출될 경우,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하는 소규모주민밀착사업으로 이관하여 처리
- 이해관계자 간담회 참여대상
 -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지역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업부서 공무원 등 정책관련 이해관계자
- 간담회 주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담당 분과
- 추진방법
 - 실국별 또는 정책분야별로 지역주민과 관련 이해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역도 사무에 적합한 제안사업을 도출
 - 기존의 실국별 토론회를 주제별 이해관계자 토론으로 변경하여 진행
 - 제안된 사업안은 사업부서 검토 및 반영, 분과위원회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됨
- 주민의 권한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은 실국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제안사업을 도출하고 실국의 사업부서에 전달함
 - 사업을 실국의 예산안에 편성하는 최종권한은 실국에 있음
 - 하지만 분과위원회가 실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진행 절차

- 1단계 : 분과별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 초청 간담회 개최
 - 정책분야별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분야별 사업안을 도출함
 - 신규사업 제안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변경, 확대, 폐지 등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함

[그림 21] 주제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제안사업 예산반영 절차



- 2단계 : 제안사업에 대한 실국별 예산안 반영
 - 실국의 사업부서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제안사업에 대해 1차적으로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도·시군 사무 여부 등에 대한 검토함
- 【부적격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시·군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소규모주민밀착사업으로 이관)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부서는 광역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실국별 사업예산안에 편성함
 - 제안된 사업안의 사업비 산출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 제안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조정함
 - 사업부서는 제안사업의 예산안 반영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함
- 3단계 : 분과위원회 확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제안사업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함

3) 주민제안을 통한 참여예산 편성 (도 정책사업 주민제안)

■ 개요

- 기본방향
 -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역도 정책사업으로 기획하고 구체화시키는 방식
 - 주민의 직접제안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간접제안 방식을 활용함
- 사업예산 규모
 -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사업 선정
- 대상사업
 - 도 사무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으로서, 도비로 수행되는 자체사업

- 도정주요분야 : 복지, 경제·일자리, 여성, 교통, 문화관광, 환경, 안전, 주택 등
- 시·군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접수될 경우,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하는 소규모주민밀착사업으로 이관하여 처리
- 추진방법
 -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함.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에 제안하도록 함
 - 제안된 사업안 또는 주민의견은 사업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심사, 총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예산사업 도출
 - 참여예산 총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고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이수자 및 제안자의 투표 결과와 일반주민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차년도 도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 사업 선정의 공정성, 민주성 제고
 - 충남도민과 충남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함
 - 사업신청은 주민참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 중 우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 주민에게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하여 참여도를 제고함
- 주민의 권한
 -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거치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은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주민이 행사함
 -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편성 여부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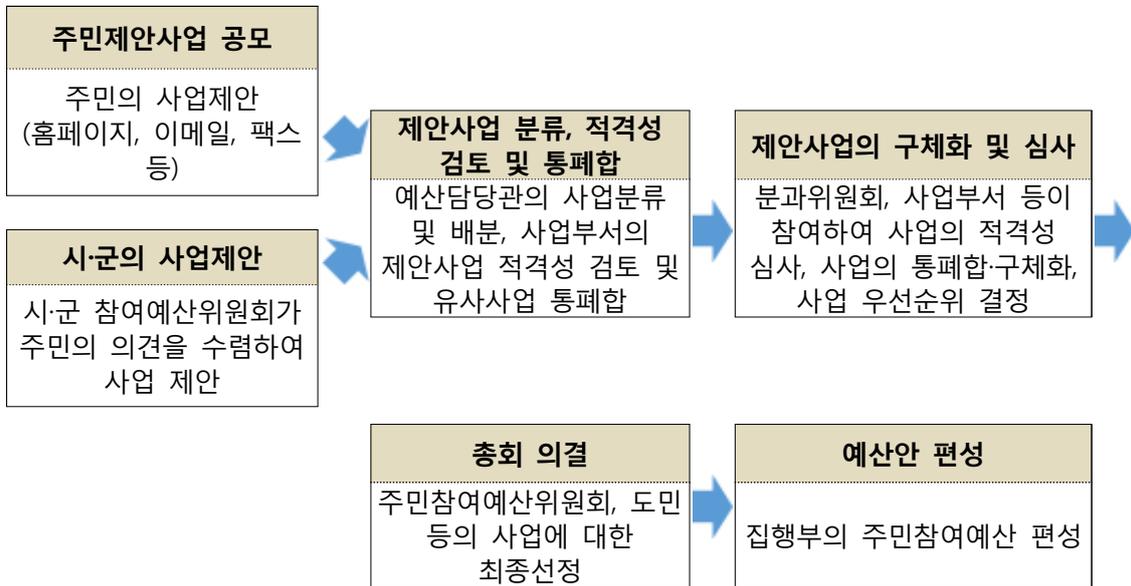
■ 진행 절차

- 1단계 : 주민제안사업 접수
 -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신청자가 홈페이지, 이메일,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일정 시점 전까지 사업제안 제출하도록 함
 -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안을 제출함. 다만, 제안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관 주도성의 문제를 방지하도록 함
 - 신규사업 제안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변경, 확대, 폐지 등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함
- 2단계 : 사업부서 검토

- 예산담당관은 접수된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부서에 배분함
- 사업부서는 배정된 제안사업에 대해 1차적으로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도·시·군 사무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함
- 사업부서는 사업비 산출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정하여 의견을 제시함
- 사업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 제안사업들을 통폐합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사업부서는 사업별 의견서를 첨부하여 분과위원회에 회부함

<p>【부적격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시·군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소규모주민밀착사업으로 이관)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그림 22] 주민제안을 통한 사업선정 절차



- 3단계 : 분과위원회 심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로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 검토(사업 검토부서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부적격 사업을 제외하고 적격사업은 1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

- 심사 대상 중 광역도 사업안으로서 적절하고 충실한 사업은 심사대상으로 분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자의 취지를 살려 사업의 조정·통합·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광역도 사업안으로서 적절성이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사업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제안자, 이해관계자, 사업부서 등과 공동으로 숙의 및 토론을 실시함. 이를 통해 사업안의 조정·통폐합·구체화 작업을 실시함
- 심사 대상에 오른 사업을 대상으로 분과위원들은 필요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총회에 상정함
- 평가기준은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회적 가치실현, 효과성, 목표달성도, 수혜대상, 시급성, 사업비 적정성임

[그림 23]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평가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회적 가치실현	이 사업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발전(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 협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사업계획서에 비취보았을 때, 사업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수혜 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 4단계 :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총회)
 - 총회 상정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이수자, 일반도민 등의 투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 예산한도가 설정된 주민제안사업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이수자, 일반도민 등의 투표를 통해 고득점 사업 순으로 결정

- 예산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이해관계자 간담회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이수자, 일반도민 등의 투표를 통해 총점이 28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으로 선정
- 투표참여자별 투표가중치 부여. 참여예산위원 50%, 예산학교 이수자투표 10%, 일반도민투표 40%를 부여함
- 투표방법은 총회 현장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이용한 투표를 활용하여 투표율 제고

4) 주민참여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 기본방향
 -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실시
 - 집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우수 사업 선정을 위한 자료 확보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 대상사업
 - 모든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예산부서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만약 사업수가 과다하여 모든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울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
- 예산집행 모니터링단 구성
 - 분과위원회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사업예산편성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루는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함
 - 사업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매칭시키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
- 참여방법
 - 사업설명서, 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서면평가방식의 모니터링 실시(연 1회)
 - 모니터링 활동 이전에 분과위원회별 사업에 대한 검토와 토론
 -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함
 - 서면심사와 현장확인 자료를 종합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입력

- 결과 활용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부적정 의견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 우수사업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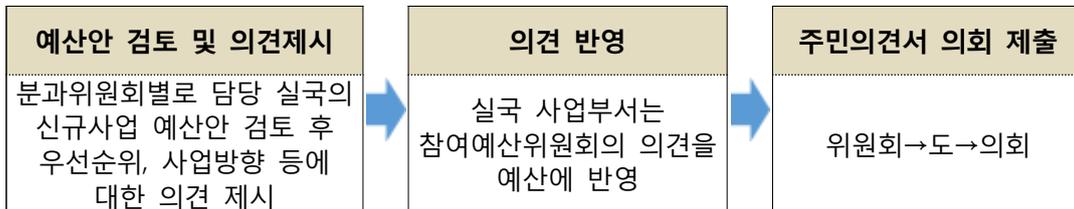
- 기본방향
 - 주민참여예산의 결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대상사업
 - 전년도 참여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정책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부서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사업평가단 구성
 -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예산편성, 모니터링, 사업평가 과정에서 다루는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함
 - 편성-집행-평가 과정을 매칭시켜 평가의 질과 효과성 제고
- 평가방법
 - 연초에 과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사업효과성, 사업완료 여부 및 불용·이월 등 평가 실시
 -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 작업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적기 추진 권고
 - 우수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6) 실국의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기본방향
 - 실국의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분과위원회 활동
 -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한정

- 대상
 - 사업의 특성상 계속사업은 중간에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따라서 신규사업만을 대상으로 검토함
- 추진방법
 -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사를 통해 도에 제출
 - 추진방향, 적정성, 개선사항, 사업간 우선순위 등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도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토의하여 분야별로 주민의견 종합·정리
 - 분과위원회에서 실국의 신규사업의 예산안을 검토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부서에 전달
 - 예산부서는 주민의견서를 실국에 전달하여 실국의 예산편성에 반영

[그림 24] 신규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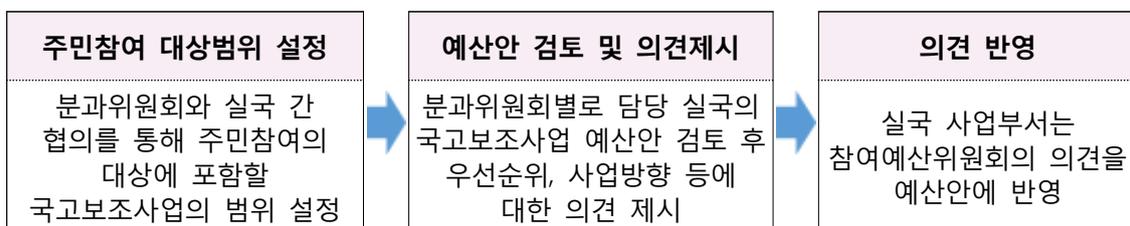


기 국고보조사업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기본방향
 - 실국의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분과위원회 활동
 - 광역도가 주도하는 국고보조사업 계획으로 한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수렴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 사업 등 주민참여불가 대상 제외
- 대상
 - 국고보조사업 중 광역도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함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부처, 광역도, 시·군 등이 연계되어 수립되므로, 광역도의 주도적인 사업을 선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실국간 사전 협의를 통해 주민참여의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범위를 한정해야 함
- 기초연금 등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의무적 사업은 제외함
- 추진방법
 - 차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사를 통해 도에 제출
 - 적정성, 개선사항, 사업간 우선순위 등 의견 제시
- 주민의 권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국의 국고보조사업을 검토하고 실국에 의견을 전달함
 - 주민의견을 국고보조사업 계획안에 반영하는 최종권한은 실국에 있음
- 진행 절차
 - 도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토의하여 분야별로 주민의견 종합·정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실국 간 협의를 통해 주민참여의 대상에 포함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범위를 설정함
 - 분과위원회에서 실국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을 검토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부서에 전달
 - 예산부서는 주민의견서를 실국에 전달하여 실국의 예산편성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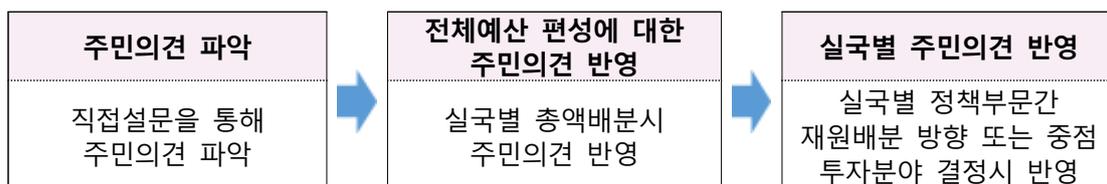
[그림 25] 국고보조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8) 전체 예산안 편성 및 자원배분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기본방향
 - 차년도 자체사업 중 중점투자분야, 전체 자체사업 예산편성 및 부문별 예산 편성 방향 결정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 대상
 - 차년도 중점투자분야
 - 차년도 자체사업의 예산편성 방향으로서 실국별 배분액
 - 실국 내에서 부문별 예산 편성액
- 추진방법
 -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 예산부서와 실국에 전달
- 주민의견 접수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 직접설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게시하여 의견수렴
 - 온라인 설문 : 도 정책서포터즈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 직접 설문 : 예산교육시 교육참여자들에게 직접 설문
- 진행 절차
 - 홈페이지, 직접설문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은 도 예산부서에서 종합·정리하여 실국별 자체사업비 배분시 반영됨
 - 실국에 전달되어 실국의 중점투자분야 결정 및 정책부문간 자원배분시 반영
 -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서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그림 26]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



- 설문 구성
 - 충청남도의 설문구성은 분야별,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 또는 예산편성방향(중

- 액, 유지, 감액, 폐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짐
- 설문대상 주민이 도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설문구성으로 주민의견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방식 보다는 각 부문별로 주요 사업들을 열거하여 주민이 추진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도록 한 이후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단, 설문제 제시되는 사업 목록은 세부사업 보다는 단위사업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국별 비전이나 전략목표가 수립되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비전이나 전략목표를 설문문항에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도 사용 가능함

□ 예시

- 1) “행복하고 편안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도로·철도·항만 등 SOC 분야	2) 교통·물류 분야
3) 주택·건축 분야	4) 계획적 국토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5)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 활성화	

- 2)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추진
 - 2)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 3)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 4) 로컬푸드, 농식품 수출 등 농산물 유통 선진화
 - 5)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확충

- 3) “각종 재난·사고로 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 2) 서민생활 민생위해요소 관리
 - 3)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 4)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주요시설인 수문 정밀점검 시행
 - 5)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안전 점검 및 교육

- 주민의 권한
 - 분야별,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 또는 예산편성방향(증액, 유지, 감액, 폐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파악된 주민의견은 예산담당관, 실국, 사업부서에 전달됨
 - 주민의견의 반영 결정은 실국에서 이루어짐

9) 소규모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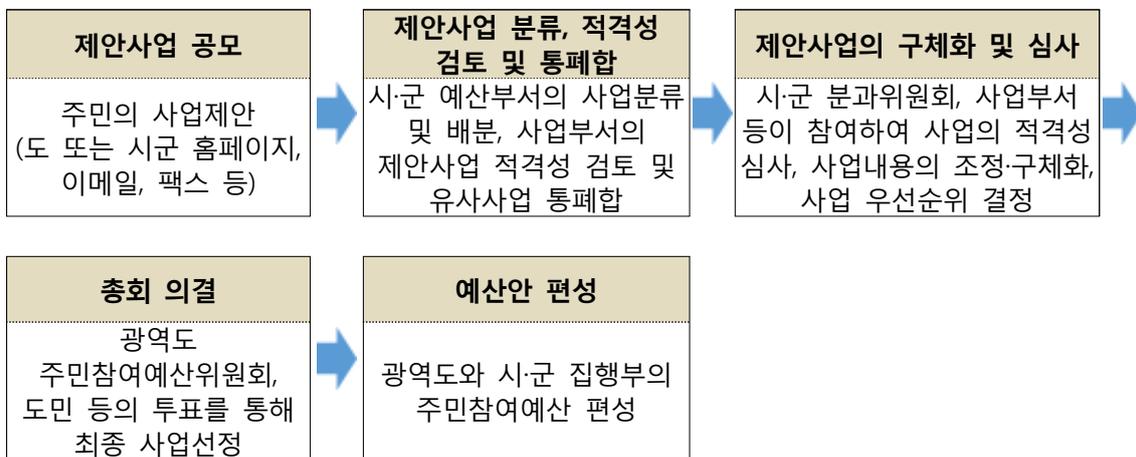
- 기본방향
 - 시·군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성숙되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역량 제고
- 사업규모
 - 일정한 한도액을 설정
 - 시·군별로 할당액을 설정하지 않고 사업의 질에 의해서 지원액 결정
- 대상사업
 - 시·군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시군에서 실행가능하고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추진방법
 - 주민으로부터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심사
 -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보고
 - 도민참여예산 총회에 보고한 사업에 대해 도참여예산위원 및 도민투표단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차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
 - 각 시·군의 주민, 시군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이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함

- 사업신청은 주민참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좋은 의견 제출 시민에게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하여 참여도를 제고함
- 주민의 권한
 - 제안된 사업은 시·군 사업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거치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은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주민이 행사함
 -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편성 여부를 결정함

■ 진행 절차

- 1단계 : 주민 제안
 - 신청자가 홈페이지, 이메일,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일정 시점 전까지 사업 제안 제출
 - 광역도로 접수된 사업은 제안자의 주거지 또는 사업대상 지역 등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 이관

[그림 27] 소규모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 2단계 : 시·군 사업부서 검토
 -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는 접수된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부서에 배분
 - 시·군의 사업부서는 배정된 제안사업에 대해 1차적으로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도시군 사무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부적격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요구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비 산출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정하여 의견제시
- 사업간 유사성이 높을 경우, 제안사업들을 통폐합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사업별 의견서 첨부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부
- 3단계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시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 검토(사업 검토부서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부적격 사업을 제외하고 적격사업은 1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
 - 사업위치가 사업심사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현장 방문
 -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사진포함) 후 분과위원회 보고
 - 심사 대상 중 사업안으로서 적절하고 충실한 사업은 심사대상으로 분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자의 취지를 살려 사업의 조정·통합·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안으로서 적절성이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사업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제안자, 이해관계자, 사업부서 등과 공동으로 숙의 및 토론을 실시함. 이를 통해 사업안의 조정·통폐합·구체화 작업을 실시함
 - 심사 대상에 오른 사업을 대상으로 분과위원들은 필요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전달함
 - 평가기준은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회적 가치실현, 효과성, 목표달성도, 수혜대상, 시급성, 사업비 적정성임

[그림 28] 소규모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선정 평가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회적 가치실현	이 사업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발전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 협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사업계획서에 비취보았을 때, 사업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수혜 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 4단계 :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총회)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군에서 심사한 사업안을 총회에 상정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도민이 투표를 통해 고득점 사업 순으로 최종사업을 선정
 - 투표참여자별 투표가중치 부여. 참여예산위원 60%, 일반도민투표 40%
 - 투표방법은 총회 현장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이용한 투표를 활용하여 투표율 제고

4. 주민참여예산 기구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위한 주요한 조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임
- 현재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지역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단계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구조 형성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지만, 위원회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에 집중하여야 함
 - 위원의 직접적인 의견은 지역주민의 의견이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달자, 심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천이나 지명 방식이 아닌, 공모나 추천식으로 충원되어야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 적정인원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적정인원을 확보하여야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적정인원을 전국 사례를 통해 산정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위원 수의 단순 평균은 90.3명임
 - 인구당 위원수를 계산하면 10만명당 4.6명이고, 이를 충남 인구 215만명에 대입하면 99.3명이 도출됨
 - 세출예산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6년 결산기준으로 100억원 당 0.136명이고, 이를 충남 세출예산 6조 3,048억원에 대입하면 85.6명이 도출됨
 - 이러한 3가지 경우의 인원을 다시 평균하면 91.7명이 도출되므로, 90명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구분	17개 광역시도 평균	충남 적용	적정 위원수
단순 평균	90.3	90.3명	90명 (3가지 경우 평균)
인구 가중 평균	10만명당 4.6명	99.3명	
세출예산 가중 평균	100억원당 0.136명	85.6명	

■ 분과위원회 적정 개수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질

적인 세부활동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주민참여예산의 심의 및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적정 수로 세분하는 것은 필수적임
- 현재 충청남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증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각각 10개와 7개의 분과위원회를 개설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예산이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6개의 분과위원회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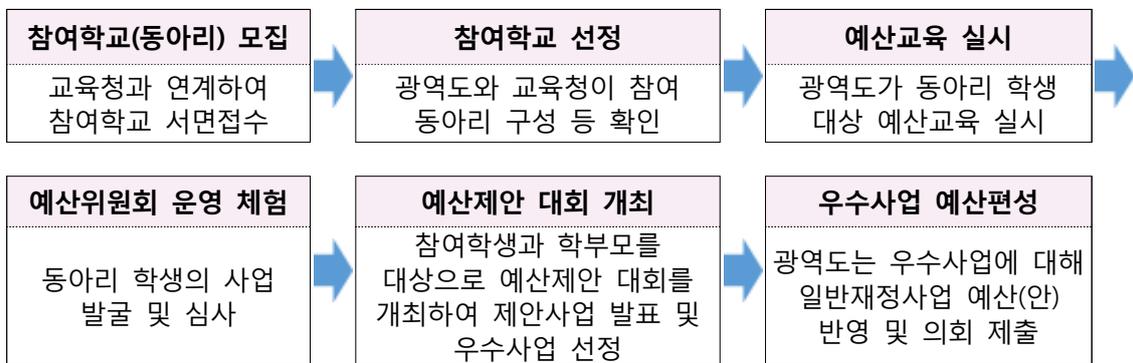
5.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기본 방향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주민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가치 학습 기회 제공
 - 기존의 청소년 대상 예산학교를 변경 및 확대 운영
 -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예산을 실시하여, 우수제안사업은 예산안에 편성
 -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청소년참여예산을 운영할 경우, 도는 지원역할 담당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 사업내용 : 예산교육, 모의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사업 제안대회 개최
- 추진방법
 - 교육청과 공동으로 참여 희망 동아리를 모집하여 학교 단위로 운영. 참여예산학교 활동실적을 학교 교육활동 실적에 반영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 광역도는 청소년 대상 예산교육 강사 지원
 - 사업발굴 및 모의 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단 지원
 - 광역도에서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간 협조를 통해 제도 시행

- 사업내용
 - (예산교육) 예산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 의의 및 참여절차 교육
 - (모의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학교별 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심사 선정
 - (모의 공동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참여학교 전체가 참여하여 제안사업 심사
 - (참여예산 제안대회) 제안사업 발표 및 우수사업 시상
 - (예산편성) 우수 제안사업은 도 사업부서 검토 후 2019년 예산안에 편성

[그림 29]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 기본방향
 - 일반 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참여예산위원의 각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거양하기 위한 심화교육으로 확대
 - 예산학교 이수자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 교육참여 일반 주민은 총회에서 주민제안사업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반 주민 대상 교육은 참여예산제 홍보, 참여예산사업 발굴 등 다양한 활동 진행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교육 상설화,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구성,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교육참여 확대
 -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과 사례학습 등을 중심으

로 한 교육과정 개설하여 참여역량 향상

- 참여예산위원 대상으로 참여예산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 운영
- 공무원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청년, 여성, 장애인 단체 등과의 연계로 다양한 계층별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예산참여 유도
- 찾아가는 예산교육에서는 시·군 예산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효율성 제고. 도 예산학교와 시군 예산학교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교육 실시

• 추진 주요 내용

- 예산학교 기본과정 : 참여예산제 개요, 제도설명, 충남 예산, 참여방법 등
- 도민 상설교육 : 예산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과 사례학습을 통한 예산교육
- 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 제안사업 심사기법, 모니터링 실무, 전체예산 분석 방법, 주민의견서 작성·보완을 위한 교육·토론위원 소통 워크숍 등
- 찾아가는 예산학교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사업제안 등 시민참여 방법 등 설명
- 예산학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참여예산, 모의 제안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안사업 접수
- 이수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안사업에 대한 투표 대상, 사업 모니터링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 기본 방향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예산연구회 정기과제로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업무 지정. 예산연구회의 존립의 목적 달성
- 연말 예산연구회와 참여예산위원회의 합동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과제 도출
- 개선과제는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주체

- 평가보고서 작성은 충청남도 예산연구회 또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 실시

- 토론 및 숙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세부 내용
 -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연구회가 합동으로 토론
 - 1차적으로 충청남도 예산연구회 또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 평가보고서 작성
 - 2차 과정으로서 평가보고서 및 개선과제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연구회가 합동 토론회 개최
 - 참여주체들의 평가 및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정리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주민의 참관 및 의견제시 유도
 - 논의의 깊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초청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제 및 패널토론
 - 세부 주제별 분임토론 및 발표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
- 토론회 결과 활용
 -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 및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안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기본방향
 - 주민참여예산과 충청남도 재정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예산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물리적 이동 없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
 - 다수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에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민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터넷공간 마련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메인 플랫폼화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함
- 주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성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위원회운영, 사업제안에 대한 사항을 도민과 참여예산위원회에 공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충청남도의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이러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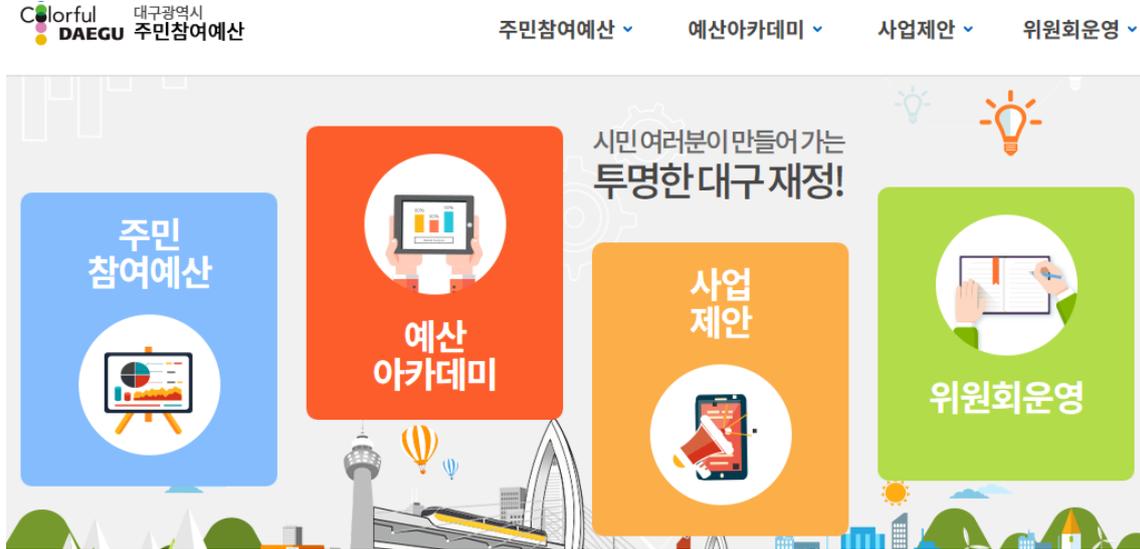
- 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아야 함
- 주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으로서 홈페이지와 도의 재정, 관련행정정보와 연계할 경우, 일반 주민과 참여예산위원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핵심 필요사항
 - 온라인 홍보/신청/공개 창구
 - 도민의 편리한 참여예산 참여. 도민설문, 사업제안 등의 기능
 - 참여예산 선정의 투명한 관리. 사업선정 또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기능
 - 선정사업의 체계적 사후 관리. 사업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기능
 - 참여예산위원의 소통 창구

[그림 30] 주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구성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게 될 기능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사업제안, 예산학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활동 사항을 주민들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함

[그림 31]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메인 플랫폼화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군 위원 간 토론방·알림방 운영, 제도개선 사항 공유 지원
 - 시군 추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또한 제안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 개설
- 모바일환경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 향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노인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인터넷과 친숙하지 않은 노령주민이 인터넷을 통한 사업제안과 주민참여예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장이나 청년대표 등이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우선, 이장이나 청년대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을 받은 이장이나 청년대표가 지역의 노인과 인터넷 활용 미숙자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해 줌
 - 이장이나 청년대표 대상 교육은 충청남도의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조직과 인력 구성

-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
- 전담조직 및 인력
 - 예산담당관 소속으로 가칭 ‘도민참여예산팀’ 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함
 - 담당업무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학교 운영 및 회원관리, 예산연구회 구성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지원, 제도개선,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관리 등임
 - 담당 인력은 유사규모의 타 자치단체 사례에 근거하여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

[그림 32]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 지원 행정조직(안)



- 업무수행의 주안점
 - 주민참여방법이 다양화되고, 주민참여의 절차가 정교화됨에 따라 제도운영 업무가 과다해지고 있음
 - 집행부의 조직과 인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남도 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

- 기본 방향
 - 충청남도과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필요
 - 도 정책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 주

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 필요

- 시군별 지역회의 구성
 - 각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출신의 도민참여예산위원으로 이루어진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교류·협력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시 도민참여예산위원이 참석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집 및 정보교류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및 토론회 정례화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간 협력 및 활동 공유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시, 워크숍 또는 토론회 일정을 추가하여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교류활동 실시

제6장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방향

■ 배경 및 목적

-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내의 시·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됨
 - 또한, 주민참여예산 경험을 통해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기회를 갖게 됨
 - 이는 상위 자치단체인 광역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제고할 수 있음
- 충청남도 15개 시·군 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냄
 - 천안시는 2017년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수상할 정도로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나 대다수의 군 자치단체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반인 참여예산 기구에서 자치단체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천안시, 논산시, 당진시 등은 다양한 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제도적인 발전 형식을 보이는 반면, 금산군, 태안군 등은 기반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참여 수단에서도 자치단체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천안시, 논산시, 서산시 등은 다양한 수단을 마련한 반면, 보령시, 금산군 등은 소수의 참여수단만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함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15개 시·군 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격차를 줄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주민참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 수준이 낮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 광역도와 시·군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이므로, 광역도에서 수행하는 활성화 방안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개입과 참견의 관점이 아닌 광역도와 시·군의 상생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사례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과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단체 인센티브 교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수준이 낮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수사례를 접하고 벤치마킹을 유도할 수 있음
- 둘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고, 운영수준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단, 운영평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운영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형식을 적용함

제2절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

1. 15개 시·군 주민참여예산 박람회

■ 기본방향

-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 15개 시·군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
-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을 통해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주민참여예산 장려

■ 추진방법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15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여, 15개 자치단체가 1년 동안 수행한 주민참여예산 실적 중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홍보
- 소개된 사례 중 우수사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우수사례 자치단체에 시상
- 각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 부스를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 및 충청남도 도민에게 대표실적 및 전체 운영실적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회 제공

2.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1) 기본 방향

- 운영평가는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과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는 과정평가와 제도운영의 결과 내지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임성일·서정섭, 2015: 71)⁵⁾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많은 사례에서 실질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위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도모
 - 15개 지역의 제도운영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 지역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인프라 및 역량 격차 해소
 - 시·군 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 행·재정적 유인 부여와 지역간 비교를 통해 경쟁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압력이 형성되도록 함
 - 구체적으로 선도적인 시·군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격려하고, 부진한 지역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15개 시·군의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와 광역도가 별도로 평가를 운영할 경우 제도운영 방향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광역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평가들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몇 가지 평가지표를 추가함

5) 임성일·서정섭.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우수자치단체 심사(안)

■ 개요

-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운영모델 발굴
 - 발굴된 우수모델을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
- 심사대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우수단체 선발방법
 - 자치단체를 4개 유형(도시형 광역단체, 도농형 광역단체, 도시형 기초단체, 도농형 기초단체)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우수단체 선발
 - 자치단체별 유형 분류에 따라 동종 유형별 심사 후 종합점수에 따라 유형별 우수 자치단체 선발

구분	도시형 광역단체	도농형 광역단체	도시형 기초단체	도농형 기초단체
우수 자치단체(안)	2개	2개	6개	5개

- 심사방법
 - 정량지표(60점)와 정성지표(40점) 점수를 합산(100점)하여 종합 점수에 따라 유형별 우수 자치단체 선발하되, 정량지표가 30점 미만인 경우는 심사 제외
 - 행정안전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심사단을 구성. 심사단 부여점수의 평균값 사용
- 심사결과의 활용
 - 15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부여(총 25억원)

■ 심사지표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0점 중 정량지표 평가에 60점이, 정성지표 평가에 40점이 할당됨

- 정량지표 평가는 크게 정책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30점)과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30점)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 정성지표 평가는 참여의 범위·수준(10점), 주민의 자율성(5점), 홍보·교육(5점), 대표성(5점), 투명성(5점), 주민의견서의 충실성(5점), 피드백(5점)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3)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 기본방향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
-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 수준이 낮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

■ 평가대상

-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 자치단체와 군 자치단체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동종 유형별 평가 후 종합점수에 따라 유형별 우수 자치단체 선정
 - 각 유형별로 우수단체와 장려단체를 1개씩 선정하여 총 4개 기관에 시상
- 평가지표를 통해 점수 산정
 - 평가지표는 정량지표(65점)와 정성지표(55점)로 구성
 - 12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수상사 선정
- 평가단 구성 : 충청남도 공무원, 도민참여예산위원, 예산연구회 회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정성지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 각 단체별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단 부여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

■ 평가결과의 활용

- 시와 군 유형별로 각각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 부여
-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정인센티브로 활용

■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와 추가지표로 구성됨
 - 대부분의 지표는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평균 참석률(5점),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2.5점), 결산 또는 사업평가에 대한 주민참여(2.5점) 지표는 추가지표임
 - 전체 점수 110점에서 10점만이 추가지표 점수에 해당됨
- <정량지표 : 70점>
- (참여예산의 비중) 지방자치단체 전체 정책사업비(일반+특별, 2019년도 예산안 기준) 중 주민참여예산의 비중(30점)
 -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15점) ② 주민참여형 참여예산사업(15점), ③ 일반참여예산사업(15점)으로 구분 (각 항목의 합계 점수가 30점 초과 시 30점 부여)

정책사업비 중 비중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당없음	0.1%미만	0.1~0.2%미만	0.2~0.3% 미만	0.3~0.4% 미만	0.4%이상
점수	0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정책사업비 중 비중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당없음	0.5%미만	0.5~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 이상
점수	0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정책사업비 중 비중	일반참여예산사업					
	해당없음	1%미만	1~4% 미만	4~7% 미만	7~10% 미만	10% 이상
점수	0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실적(30점)
 - 구성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종류(10점)
 - 주민참여예산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에 관여하는 경우 포함)로서 일반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비율 30%미만, 운영위원회와 민간협의회는 50%미만)
 - (예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여러 분과도 1개로 취급), 지역회의(여러 지역도 1개로 취급), 운영위원회, 민관협의회 등

종류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점수	0점	1점	4점	7점	10점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평균운영횟수(10점)
- 평균운영실적 = (총 개최횟수 / 총 기구 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3개) 및 지역회의(6개)를 운영 중인 경우 총 기구수는 10개

횟수	1회 미만	2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4회 이상~ 5회 미만	6회 이상
점수	0점	1점	4점	7점	10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평균 참석률(5점)
- 평균참석률 계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각 회의별 참석률을 평균하여 전체 참석률을 산정
- 평균참석률 = $\Sigma[(\text{개별 회의 참석위원수} / \text{전체 위원수}) / 100] / \text{총 회의 수}$

횟수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시 공모·추첨을 통한 선발 비율 (5점)

비중	50%미만	50~60%미만	60~70%미만	70~80%미만	80%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공모·추첨 : 일반 주민 대상 공모 후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무작위 추첨을 의미
- 비율 계산 시 동일인원이 중복 상정되지 않도록 주의. 공모·추첨을 통해 선발된 지역회의 위원이 지역회의의 추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위원이 되는 경우는 공모·추첨을 통한 선발에 해당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장치에 대해서는 가점(장치 당 1점, 최대2점) 부여

-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2.5점)

비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실시하는 경우
점수	0점	2.5점

- (결산 또는 사업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결산 또는 사업평가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2.5점)

비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실시하는 경우
점수	0점	2.5점

- <정성지표 : 40점>
- (참여의 범위·수준) 지역의 참여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예산과정에 대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10점)

비고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 (주민의 자율성)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하는 일반주민들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5점)

비고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홍보·교육) 일반 주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홍보·교육 실적 (5점)

비고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홍보·교육) 일반 주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예산교육의 질 정도 (5점)
- (대표성) 주민참여예산기구 외의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수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운영 실적 (5점)

비고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투명성)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여부, 지방예산과 관련된 정보의 주민 참여기구 또는 일반 주민에게 사전 공유·공개 여부 및 정도,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결과의 공개 여부 및 정도,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록 등 운영실적의 기록 및 공개 여부, 이상의 공개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 용이성 등 (5점)

비고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주민의견 수렴방법, 주민의견, 주민의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검토결과 등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5점)

비고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피드백)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시 드러난 문제점, 제도 운영에 관한 주민의 건의사항 등이 반영되고 있는 정도 (5점)

비고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표 19]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정량지표 정리

		정량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참여예산 의 비중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당 없음	0.1% 미만	0.1~0.2% 미만	0.2~0.3% 미만	0.3~0.4% 미만	0.4% 이상	
		0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당 없음	0.5% 미만	0.5~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 이상	
		0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일반 참여예산사업	해당 없음	1% 미만	1~4% 미만	4~7% 미만	7~10% 미만	10% 이상	
		0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주민참여 예산기구 구성 및 운영 (35)	구성된 주민참여예산기구 종류 (10)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0점	1점	4점	7점	10점		
	주민참여예산기구 평균운영횟수 (10)	1회 미만	2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4회 이상~ 5회 미만	6회 이상		
		0점	1점	4점	7점	10점		
	주민참여예산위원 회 위원 평균 참석률(5점)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시 공모-추첨을 통한 선발 비율 (10)	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 이상		
		0점	1점	4점	7점	10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장치 유무 (가점)	0점		1점		2점		
	예산편성 이외 과정에 대한 참여 (5)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 여부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실시하는 경우		
			0점			2.5점		
결산·사업평가 과정에 참여 여부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실시하는 경우			
		0점			2.5점			
소계		70점						

[표 20]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정성지표 정리

정성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참여의 범위·수준 (10)	지역의 참여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예산 과정에 대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2점	4점	6점	9점	10점
주민의 자율성 (5)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하는 일반주민들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1점	2점	3점	4점	5점
홍보·보육 (10)	일반 주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홍보·교육 실적	1점	2점	3점	4점	5점
	일반 주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예산교육의 질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대표성 (5)	주민참여예산기구 외의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수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운영 실적	1점	2점	3점	4점	5점
투명성 (5)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여부, 지방예산과 관련된 정보의 주민 참여기구 또는 일반 주민에게 사전 공유·공개 여부 및 정도,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결과의 공개 여부 및 정도,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록 등 운영실적의 기록 및 공개 여부, 이상의 공개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 용이성 등	1점	2점	3점	4점	5점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5)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주민의견 수렴방법, 주민의견, 주민의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검토결과 등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1점	2점	3점	4점	5점
피드백 (5)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시 드러난 문제점, 제도 운영에 관한 주민의 건의사항 등이 반영되고 있는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소계		40점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최웅선 책임연구원

총괄

□ 내부 연구진

성태규 선임연구원

고승희 연구위원

정재인 정책연구위원

신혜지 연구원

□ 외부 자문위원 (충청남도 예산연구회)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이호 더이음 대표

정완속 (사)디모스 대표

